

2009년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지침서
**KOTRA 베트남 투자자문
상담 사례집**

머리말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 노동력, 적극적인 정부지원 정책 등으로 우리기업에게 중국이후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2008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해외투자 상담 수요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으며, KOTRA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베트남 투자상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우리기업 및 관련기관들과 나눌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KOTRA 베트남 투자자문/상담사례집은 2007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KOTRA 해외투자콜센터에서 베트남에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지에서 법인운영 중인 우리기업들이 가장 많은 자문과 상담을 받았던 47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사례집이 베트남에 진출을 준비하거나 기 진출기업들의 유사한 궁금증과 문제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투자진출 지원기관들에게는 베트남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상담사례집이 발간되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해외투자콜센터 김도훈 베트남 투자상담위원과 해외투자전략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12월
KOTRA 해외사업본부장
박기식



Contents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I. 투자준비 - 법인설립, 공장설립, 사무실임차, 주택임차

상답사례 1	일반용지, 산업단지 중 공장설립은 어디가 유리한지...	9
상답사례 2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어느 형태로 법인설립을 해야 하는지...	12
상답사례 3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14
상답사례 4	하노이 인근 박닌(Bac Ninh)성의 토지임차료는 얼마인지...	17
상답사례 5	Red Book이 무엇인지..	19
상답사례 6	공장부지의 확보 및 공장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1
상답사례 7	제조법인, 건설법인, 서비스 업종의 법인설립 기간과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소용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24
상답사례 8	베트남 투자인센티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6
상답사례 9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투자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8
상답사례 10	일반용지, 산업공단(IZ), 수출가공공단(EPZ), 경제특구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31
상답사례 11	호치민시의 아파트와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33
상답사례 12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35
상답사례 13	유한회사의 청산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7
상답사례 14	유통업,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을 100%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요.	39
상답사례 15	베트남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41
상답사례 16	지적재산권의 침해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45
상답사례 17	현지 법인장이 퇴직을하여 변경등록을 하려합니다.	48
상답사례 18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증명서를 받고 투자프로젝트의 내용이 변경 될 시, 변경절차와 투자프로젝트의 활동기한, 투자증명서가 회수 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50
상답사례 19	건설업체의 법인설립과 Project Office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2



상당사례 20	1인 유한책임회사의 권리 및 의무,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55
상당사례 21	베트남에서 부동산 신도시개발 및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 절차, 소요기간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58
상당사례 22	베트남의 WTO에 가입후, 서비스업종의 업종별 개방 스케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61
상당사례 23	법인의 설립후에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와 절차는 무엇인지요.	64

II. 법인운영 - 인사, 노무

상당사례 24	외국 투자기업의 근로자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69
상당사례 25	파업을 예방하려면...	72
상당사례 26	한국에서 파견되는 직원의 노동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75
상당사례 27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연령기준과 근로계약의 형태를 알고 싶습니다.	77
상당사례 28	베트남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79
상당사례 29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지불방식,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82
상당사례 30	회사의 취업규칙을 해당 노동관서에 등록해야 하나요.	85
상당사례 31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87
상당사례 32	2008년도 베트남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90
상당사례 33	베트남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요율은?	92
상당사례 34	베트남 근로자의 추가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년에 200시간까지의 추가 근무 조건, 원칙과 300시간까지의 추가 근무 조건, 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94
상당사례 35	베트남에 상여금 규정, 퇴직금 규정과 임금등급간 최소 5%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96



Contents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III. 법인운영 - 세무, 회계, 금융

- | | | |
|----------------|---|-----|
| 상담사례 36 | 2009년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01 |
| 상담사례 37 |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법인세, 부가세, 개인소득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04 |
| 상담사례 38 | 베트남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알고 싶습니다. | 108 |
| 상담사례 39 | 베트남 부동산 및 건설사업 관련 주요 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110 |
| 상담사례 40 |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공제가능비용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제불가능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12 |
| 상담사례 41 | 개인소득세법 상 거주자, 비거주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란 무엇인지요... | 115 |
| 상담사례 42 | 부가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17 |
| 상담사례 43 | 법인세법 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19 |
| 상담사례 44 |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는 비용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21 |
| 상담사례 45 | 개인소득세법 상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123 |
| 상담사례 46 | 개인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소득공제와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126 |
| 상담사례 47 |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의 공제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128 |

투자준비

(법인설립, 공장설립, 사무실임차, 주택임차)





상담사례 1

일반용지, 산업단지 중 공장설립은 어디가 유리한지...

2007년 12월 10일

A 업체는 플라스틱 사출 업체로서 박사장님은 최근 중국의 기업 환경이 악화되어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옮기기 위해 2007년 11월부터 베트남에 여러 차례 출장을 다니면서 제조공장 부지를 물색하는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용지에 공장을 설립한 경험이 있으나, 여러 가지 힘든 경험을 하였기에 베트남에서는 일반용지와 산업단지를 비교 후에 공장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을 여러 차례 베트남에 출장을 보내어 관련 정보 및 부지를 확보하였고, 출장 시 알게 된 공무원들로부터 2개의 일반용지와 1개의 산업단지를, 먼저 진출한 동종업계의 G 사장님으로부터 호치민 인근의 산업단지를, 그리고 현지에서 출장 시 알게 된 한국인 K 씨(베트남 5년 거주)로부터 해당 공장부지(일반용지)를 소개 받았습니다. A 업체의 박사장님은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자신감은 있었으나, 투자절차나 법규, 토지사용권, 임차권, 토지보상비 등 투자에 대한 베트남의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대료가 약간 비싸더라도 외국기업은 산업단지(공업단지)를 선호합니다.

일반용지는 토지사용료 및 보상비가 저렴하나, 전력, 용수, 폐수 처리시설 등의 인프라를 직접 책임져야하고, 인허가 등의 서류도 DPI(해당성의 투자계획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

니다.

산업단지는 공단을 조성한 주체가 어느 정도 전력, 용수의 안정성을 확보하므로 공장운영에는 문제가 없으나, 토지임차료가 비싸고 BOM(공단관리위원회)에서 법인허가 및 모든 사항을 허가 및 관리하며, 산업단지를 조성한 주체가 항상 모든 사항을 협조합니다.

A 업체의 박사장님은 100% 단독투자자로 베트남 투자법 제21조 직접투자 형식에 속하게 되며,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단지(공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해 공장을 지을 경우 법인세의 혜택(2008년까지는 20%, 15%, 10%, 2009년부터는 20%, 10% 중 적용)을 보실 수 있으며, 최대 50년 간 토지임대 및 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된 일반용지에 공장을 설립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사용권자(해당성이나 베트남인)에게 토지보상비와 철거비용 등을 지불한 후에 사용권을 취득하고 법인설립 및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실 수 있으며, 이때 전기, 수도, 인프라의 건설등 제반비용등은 A 업체의 박사장님의 몫이 됩니다. A 업체의 박사장님이 호치민 인근, B성의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실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주체에게 해당 산업단지의 잔여 허가 기간 동안에 맞추어 공장임차료를 지불하고 법인설립과 공장설립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일반용지에서는 토지사용료, 보상비와 철거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며, 비교적 낮은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나, 각종 허가 및 인프라 건설 등에 추가비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전기, 수도, 공장관리, 인프라 등에 어느 정도 보장성은 있으나, 토지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됩니다. 베트남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이나 토지임차권을 취득하여 해당 허가 기간 동안에 법인을 운영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우리 기업은 법인설립 시 2007년 이전에는 공장부지의 임차를 일반용지에 많이 설립하였으나, 요즘은 산업단지로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소 임차료가 높다고 해도 제조업에서는 전기의 사용이나 인프라 등 그나마 전기, 용수의 사용이 원만한 산업단지에 공장이나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을 기준으로 호치민 인근의 D성과 B성 산업단지의 임차료는 약 45~70불 정도이나 업체의 투자규모나 계약 접근방식에 따라서 토지임차료가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임차료는 조성한 주체가 공시지가에 인프라 계수 등을 토대로 임차료를 정하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먼저 진출한 기업은 위치가 좋은 곳에 공장을 설립하고도 임차료가 낮고, 나중에 진출한 기업은 위치가 좋지 않아도 높은 임차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요즘 호치민과 하노이시를 중심으로 인근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항구까지의 거리와 시간, 도로상황, 물류운송 등에 적합한 산업단지가 계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굳이 임차료가 높은 산업단지 보다 해당 관련 업체와의 연관성, 인프라 구성(전력, 수도)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답사례 Tip

공무원으로부터 소개 받은 일반용지의 등기권리증을 먼저 확인 후에 토지허가 만료 기간과 사용권 취득이 가능한지, 공장설립에 문제가 없는지, 해당 보상비, 철거비의 지불 후에 바로 법인설립과 공장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통역원과 공무원은 여기서 계약 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어 있으며, 공장부지

의 모든 사항이 진행되는 동안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성의 인민위원회 각 부서의 문서 및 회의 등의 회람과 담당자의 서명 등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관하며 만약에 있을 분쟁을 대비하며 일반용지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계약에 신중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의 사용권자가 1인 일때는 그나마 일처리가 빠를 수 있으나, 2인 이상의 다수의 등기권리인이 있을 경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던 공장부지인데도 철거비, 보상비 문제부터 해당 담당자가 바쁘거나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공장허가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2

유한회사, 주식회사 중 어느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지...

2007년 10월 17일

C 업체는 휴대폰 및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써의 K 사장님은 2007년 8월부터 협력업체가 베트남에 진출 준비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베트남 진출을 할 수밖에 없으며, 하노이 인근에 박닌(BAC NINH)성에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 단독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C 업체의 법인형태는 1인 유한회사에 가깝습니다. 베트남 기업법에서 설립이 가능한 회사는 크게 1인유한책임회사, 2인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입니다. 보통 100% 단독투자회사인 경우는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의 형태별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특성을 설명드리면, 베트남 투자법상 1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에 회사설립 및 운영에 있어 운영방식이 간단하고, 내부 의사결정 기관과 절차를 투자자의 마음대로 정하여 정관에 기입할 수 있으며, 회계나 세무적인 측면에서 1인 독자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증자는 할 수 있으나 감자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나 배당금의 송금도 세무 당국의 납세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2인 유한책임회사는 투자자가 2인에서 50인인 경우에 설립 가능한 회사로 주로 소규모 합작회사나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설립하는 회사입니다.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투자자의 모임인 사원총회가 되며, 의결정족수는 총 사원 지분의 65%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식회사 보다 대외 공시규정이 완화되어 있으나, 지분의 양도가 사원의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베트남 회사와의 합작을 통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는 합작계약서에 따른 운영상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3 인이상의 초기 투자자를 필요로 하며 투자자의 수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하며 이사회를 필수 기관으로 하고 있고, 주식의 양도를 기본원칙으로 하나, 공시되는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유한회사는 최소 법정자본금의 규정은 없으나, 주식회사는 법정자본금으로 명시된 부분을 주식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모두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보통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는 제한된 업종과 분야가 아닐 경우, 100% 투자일 경우에는 대부분 1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합니다. (기업법 제38조, 제77조 참고)

상담사례 TIP

베트남 기업법에는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정족수를 정관자본금의 75%이상을 대표하는 사원들의 출석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의사 정족수를 주식 총수의 65%를 대표하는 수의 주주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지분총액의 65%,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65%로, 회사정관의 수정이나 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은 특별결의라하여 각 7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기업법 제51조, 제52조, 제102조, 제104조)

위 정족수의 관한 규정은 강행되는 규정이며, 위 비율보다 낮게 정관에 기재하여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작법인의 경우 51%의 지분을 확보하였어도 회사의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3

현지법인 설립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지...

2007년 5월 18일

S 업체의 L 과장은 안경렌즈를 생산하는 중견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사장님으로부터 평소에 능력을 인정받아 해외팀으로 부서를 옮기고, 베트남 하노이 인근 산업단지에 100%로 단독으로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려 하니 절차와 법규,





서류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힘든데 공산당이 존재하는 사회주의공화국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막막하였습니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절차와 서류, 허가기관 등을 어떻게 파악하고 진행하나 고심 중에 있습니다.

기업정관, 본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창립사원 명단, 토지임대 가계약서, 2년 간 재무제표, 법적대표의 여권사본,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투자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S 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현지 법인의 설립 후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국내신고 절차와 현지 사업자등록 및 허가를 받기 위한 인허가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국내신고 절차는 S 업체의 주거래 은행의 외환계에 사업계획서 양식의 기재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고, 외환계에서 요구 시 나중에 토지와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현지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하는 인허가 서류는 현지 법인의 기업정관을 새로 만들고, 본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창립사원 명단과 창립사원 여권사본, 토지임대 가계약서, 법적대표의 여권사본,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의 여권사본, 투자신청서의 작성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각각 영어 2부, 베트남어 2부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로 번역, 공증 받은 서류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과에서 확인도장을 받고,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받은 서류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확인도장을 받아 해당 성의 공단관리위원회(BOM)에 제출합니다. S 업체와 같이 산업공단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단관리위원회(BOM)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일반용지나 타 용지에 법인 및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의 투자계획부(DPI)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담사례 Tip

현지 베트남에서 인허가 서류가 구비 되었다 하더라도 허가 기관에 방문하면 대화도 통하지 않고, 미비한 서류의 첨부에 관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지에 거주하지 않고 출장으로 다녀가는 경우에는 더더욱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허가 서류가 구비 되었으면 현지에 있는 한국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인허가대행을 의뢰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합작법을 설립하는 경우 베트남측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100% 단독투자인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한국 법무법인이나, 한국계 컨설팅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모든 계약서류의 점검 등을 베트남 컨설팅회사 보다 용이하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인허가대행의 경우 한국 법무법인은 약 5000\$, 베트남 컨설팅회사는 약 3000\$이며, 이외에 법무법인이나 컨설팅회사에서 공장부지의 선정을 해주거나, 기업정관 작성, 토지계약서의 작성 등의 컨설팅을 해주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상담사례 4

하노이 인근 박닌(Bac Ninh)성의 토지임차료는 얼마인지...

2007년 6월 4일

P 사는 휴대폰 액정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서 안산에 소재한 S 공단에 공장을 운영 중이며, 올해 초 협력사가 베트남 하노이 북부지역 박닌성에 공장을 설립, 이전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계속적으로 베트남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P 사의 L 사장님은 협력업체인 S 전자가 박닌성에 소재한 Y 공단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접하고, 박닌(Bac Ninh)성의 공장을 설립하는 부지의 토지임차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박닌(Bac Ninh)성의 토지임차료는 40년 기준으로 약 30-45불/m² (2007년 6월기준)입니다. (2008년 10월말 기준으로 약 40-65불/m²/40년)

요즘 베트남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늘어나면서 투자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섬유, 의류, 신발, 플라스틱, 포장지 등은 호치민 인근의 동나이성, 빈즈영성, 롱안성, 봉타우성, 구찌등에 주로 제조공장을 많이 설립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전자, 휴대폰 부품의 제조공장은 하노이 인근의 박닌성, 박장성, 하이즈엉, 흥엔성, 하이퐁시의 산업공단에 공장설립을 많이하고 있으며, 실제 이 지역에 공장설립 문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박닌성의 산업공단은 하노이 Noi Bai 국제공

항에서 약 20km 떨어져 있으며, Hai Phong 항에서 약 112km, Cai Lan 항구에서 약 122km 떨어져 있는 비교적 양호한 물류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공단입니다. 박닌성에는 인구가 약 100만 명(2007년 말 기준)이며, 년평균 기온은 24.5°C, 강우량은 1,558mm/년, 평균습도는 73%입니다. 박닌성에는 2008년 10월 말 기준으로 7개의 산업공단이 투자승인을 받아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닌성은 하노이시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항구까지의 물류운송에서 양호하다는 점에서 많은 외국 제조 기업으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성 중의 하나입니다. 토지임차료는 위치와 임차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2007년말 기준으로 약 30-45불/m²/40년 정도였으나, 2008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m²당 40년 기준으로 약 40-65불 정도입니다. 박닌성을 비롯하여 인근의 성도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토지임차료는 임차하는 기업과 산업공단을 조성한 주체 사이의 일종의 가격에 대한 네고가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토지임차료가 m²당 50불이라 해도 대화의 스킬이나 접근방법, 대화, 임대면적 등이 타 기업보다 좋으면 45불에도 임차를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가격 네고도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Tip

기 조성된 공단이나 조성 중인 공단에 들어갈 때는 전력, 용수, 폐수처리시설, 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기업은 막연하게 공단을 조성하는 측의 말만 믿고 평수와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업처럼 계약에 관대한 기업은 좀





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토지 임차계약 시 위치, 구역, 도면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나중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덜컥 계약을 했다가 뒤늦게 구성이 늦어지거나, 최초 계약한 위치에서 약간 변경되는 경우에 언성을 높여도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으므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례로 다음달까지 인프라 구성이 완료된다는 공단 조성업체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2007년말에 계약한 우리 기업은 2008년 10월 현재, 아직까지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5

Red Book이 무엇인지...

2008년 1월 24일

2008년에 들어서서 유난히도 건설회사의 방문과 전화상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D 건설사 M 차장님, S 건설사 Y 사장님, B 건설사의 C 과장님 등, 한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베트남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국내의 건설불황을 타개하고, 글로벌경영의 일환으로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베트남의 부동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회사마다 호치민시, 하노이시, 봉타우, 다낭시 등 베트남의 주요도시에 주상복합아파트와 신도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위 건설사들은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승인과 허가를 맡아서 프로젝

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사의 사장님이나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은 베트남의 토지사용권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시적 토지사용권을 Red Book이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최장 50년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주택건설 등 사업용 부지로 사용가능한 토지를 말합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내·외국인 모두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자는 사용료를 국가에 지급하고, 사용권을 취득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권을 취득한 베트남 국민은 상속, 매매, 임대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관할 관청과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토지사용권자는 국가로부터 최장 50년 간 사용권을 취득하게 되고, 베트남 토지법 제105조에 명시된 토지사용권증서를 교부받고,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베트남의 토지사용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소유 토지인 Blue Book은 베트남 전체 토지의 90%에 해당하며 최장 50년 간 임대로 사용할 수 있고,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Pink Book이라 하여 국가유공자나 1975년 이후 통일정부의 유공자들에게 주거용으로 배분한 토지가 전체의 10% 정도에 해당하며, 양도, 저당, 상속 등이 가능한 사실상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기업이나 건설사들이 베트남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권을 이양받거나, 현지기업과 합작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의 토지를 Red Book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 건설사들은 Red Book을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TIP

우리 건설사와 한국인들은 부동산에 관한한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웬만한 주요도시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말입니다. 베트남에서 제조업 법인을 설립 시에는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으나,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 자본금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60억 베트남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달러로 환산하면 약 35만 불 정도가 됩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프로젝트인 주상복합, 신도시아파트 등에 해당되며, 부동산중개업이나 관련 감정평가 등의 서비스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 부동산중개업 서비스로 진출하는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6

공장부지의 확보 및 공장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08년 3월 18일

J 사는 지퍼와 와셔를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작년 말부터 협력사 및 동종업체가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더 이상 한국에서 공장을 꾸려 가다간 도산할 위기에 놓이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법인과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로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호치민 인근 성의 산업 단지에 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공장설립을 계획하시면 공장부지를 조성한 토지 사용권자(산업단지 조성주체)에게 공장부지(토지)를 임차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경우 공단을 조성한 토지사용권자에게 허가 기간 동안(40~50년)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공장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농지에 토지임차료, 보상비, 철거비 등을 지불하고 인민위원회로부터 직접 임차를 하는 방법과 산업단지에 공단부지를 조성한 토지사용권자(공단조성주체)에게 40~50년간 임대료를 지불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방법입니다. 공장을 건축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한 토지에 공단을 조성한 주체가 직접 공장을 짓거나 타사 건설사에게 공장건설을 의뢰하여 임대료를 납부하며 사용하는 경우와 신규로 투자자의 자금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권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의 이용, 재양도, 임대, 저당권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할 시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높은 임차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가급적 법인의 허가기간을 갖도록 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장 계약기간을 염두에 두어 공장을 임차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공장을 설립할 시에는 베트남 건축회사나 현지 한국 건축회사에 견적을 의뢰하여 건축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건축계약 후에는 설계도면이 나오면 몇 군데 건설사에 견적을 의뢰하고,





공사계약을 체결 시 반드시 계약서상에 공사에 포함되는 내용과 설계비용, 각종 인허가비용, 건물양도시 부가세 납부의 주체 등을 자세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공장 건축 허가서를 발급받을 때는 해당 건설사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되고, 환경국에서 환경허가를, 건설국에서 설계심사를, 소방국에서 소방허가를 받습니다. 시공과 감리를 같이 할 것이냐 따로 할 것이냐도 고려할 내용입니다. 준공검사 또한 건축회사에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사례 TIP

외국투자기업이 베트남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합작법인의 설립일 경우에는 합작파트너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부지를 제공받아 부지를 확보하고, 단독투자일 경우에는 해당 시·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등을 지불하고 인민위원회로부터 직접 임차거나 또는 해당 시·성으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공업단지(산업단지) 조성주체에게 40-50년 간 토지임차료를 지불하고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합작법인의 파트너가 제공한 토지나 지방 인민위원회로부터 토지보상비를 지불하고 직접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며, 공업단지 조성주체에게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토지 담보대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토지임차권이 아닌 토지사용권 등기 권리증을 소유한 토지사용권자에 한합니다.

상담사례 7

제조법인, 건설법인, 서비스 업종의 법인설립 기간과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24

2008년 10월 17일

베트남에는 아직까지 무역업과 유통업, 서비스업(프랜차이즈)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법인설립은 합작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직까지 베트남에 무역업, 유통업, 서비스업 분야는 외국인에게 완전한 시장개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9년은 WTO 개방 스케줄에 따라서 위 업종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D 무역회사는 한국에서 염색도료를 수입, 유통하는 회사로 한국 내 건설회사의 경기가 좋지 않고, 많은 건설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하여 건설 프로젝트 및 부동산개발과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은 외국 기업이 계속적으로 베트남의 부동산/건설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9년도 베트남 무역, 유통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건설회사에 염색도료를 수출, 판매하는 유통법인과 무역법인을 설립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법인은 공장부지를 확보(토지임차)하였느냐가 법인설립의 기간의 핵심 요소가 되며, 무역, 유통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주소지(사무실)를 임차하였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조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토지임차가 법인설립 기간의 관건이 되고, 건설법인과 유통법인은 법인설립 할 주소지, 즉 사무실임차 여부가 법인설립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토지임차 및 사무실임차 계약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조건부 프로젝트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투자법상 서류접수 후 15 영업일을 기준으로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적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45 영업일 안에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기관의 업무와 각 부처와의 협의, 업무량으로 인하여 허가 기간은 실제로 더 걸린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허가 받기 위해 해당 DPI(투자계획부)나 BOM(공단관리위원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인지대에 불과하나 서류를 준비하고, 번역하고, 공증받고, 컨설팅회사나 법무법인에 인허가대행 및 컨설팅을 받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상되는 비용은 한국에서 해당서류를 영어와 베트남어로 각각 번역하고 공증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 70만원 정도이고, 현지 컨설팅사를 통하여 인허가를 대행하는 수수료는 베트남 컨설팅사가 약 2000~3000불, 한국 및 외국 컨설팅사가 약 5000~6000불 정도이며, 여기에 공장부지 계약을 대행하거나, 사무실 계약을 대행하거나, 기업정관을 작성하거나 약간의 컨설팅을 포함하는 경우는 보통 20,000불에서 25,000불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담사례

Tip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기간과 비용을 단축, 절약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투자법규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투자법규와 세법, 인센티브, 토지임차, 사무실임차 등

등... 대기업처럼 인력과 자금이 충분한 기업은 하나에서 열까지 법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하여 인허가 및 컨설팅을 진행해도 문제는 없으나, 중소기업은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특히, 베트남에서의 사업은 진출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법규의 충분한 이해와 사전 계약시 점검 및 체크만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무법인이나 컨설팅회사를 선정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여 선정하는 것입니다. 인허가 대행수수료는 어쩔 수 없으나,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회사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상담사례 8

베트남 투자인센티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7년 12월 18일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베트남의 저렴한 근로자 임금에 메리트를 느끼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베트남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도 많은 외국기업들을 베트남으로 불러들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S 전자는 카오디오를 제조하는 업체





로서 베트남 진출을 위해 6개월 전부터 관심을 갖고 절차 및 법규 등을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인센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L 부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인센티브는 궁극적으로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의미합니다.

투자인센티브는 법인세 면제 및 감면, 그리고 토지사용료의 면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금관련 인센티브는 투자지역이나 투자업종, 그리고 종업원의 고용효과에 따라 투자법 시행령 및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료 면제 대상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물류비 등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인센티브는 법인세의 감면 혜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20%, 15%, 10%의 법인세 우대세율을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일반우대산업 혹은 일반우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20%의 법인세율이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 간 적용되고, 최초 이익 발생 시점부터 2년 간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5년 간은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우대산업으로 일반우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15%의 법인세 우대 혜택을 12년 간 적용받고, 최초 이익 발생시부터 3년 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으며, 이후 7년 간 5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특별우대산업으로 특별우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영업개시일로 15년 간 법인세 우대를 적용받고 최초 이익 발생시부터 4년 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9년 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상담사례
TIP

10%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2007년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 최초의 이익이 2008년도에 발생했다면 그전까지는 법인세율이 0%가 적용되고, 최초 이익발생 시점부터 4년까지인 2011년까지 법인세는 0%가 적용되고 이후 9년 간 50% 감세이므로 2020년까지 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2021년에는 10%의 법인세가 적용되며, 영업개시일로부터 15년 후인 2022년에는 정상적인 법인세 28%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09년부터는 법인세가 28%에서 25%로 조정이 되었으며 투자인센티브에서 15%의 우대세율은 삭제되었고 20%, 10%의 법인세 우대세율만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담사례 9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투자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7년 8월 2일

한국의 건설사는 베트남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한 타국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안목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대부분의 건설사는 시행사, 시공사 할 것 없이 2006년 말과 2007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부동산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베





트남의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나 외국기업의 베트남 부동산시장의 진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 건설사의 베트남 부동산개발 및 건설프로젝트 진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D 건설사도 2007년 초부터 베트남의 호치민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사 법무팀의 B 부장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허가가 간단하지 않아 회사의 대표이사과 임원들로부터 추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에 이미 프로젝트팀이 파견되어 있으나 베트남은 프로젝트 허가가 1년 정도 소요된다는 말만할 뿐 정확한 이해가 안 되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사의 지원부서인 법무팀 B부장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허가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토지확보 - 투자허가서 신청 - 토지보상 - 토지사용권증서 취득 - 건축허가 등으로 이루어 집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사업은 신도시개발 프로젝트, 주택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 공단인프라 프로젝트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프로젝트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도시 프로젝트 및 공단인프라 프로젝트는 전체 프로젝트 자금의 20%,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20헥타르 미만은 전체 프로젝트 자금의 15%, 20헥타르 이상이면 전체 프로젝트 자본금의 20%가 되어야 하며, 투자자는 재무능력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투자허가의 신청 및 발급은 대상부지가 속한 시(성) 투자계획국이 되며, 투자계획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투자허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투자허가신청서 및 서류를 투자계획국에 제출하기 전에 기업은 해당 부지의 토지용도, 도시개발계획 등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토지

사용권자와 토지사용권에 대한 가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토지의 확보는 1인 혹은 다수가 대상부지의 토지사용권을 소유한 경우의 개발과 정부가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개발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가 확보되어 가승인이나 도시계획에 의거한 개발토지지정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대상 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의 설립, 즉 투자허가서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수의 개인이나 회사가 대상부지의 토지사용권자일 경우에 토지보상비를 모두 지급하거나, 투자허가서가 발급된 후에 스케줄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투자허가서를 취득한 다수의 기업이 토지보상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하여 투자허가서가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을 마치고 나면 회사는 토지보상완료에 대한 확인증을 근거로 대상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받게 되며, 해당 시(성) 건축계획국에 마스터플랜의 신청과 토지사용권증서(Red Book)가 발급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부동산개발에 따른 절차가 완료됩니다.

상담사례

TIP

베트남에서 부동산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은 60억 베트남동이며, 약 375,000달러에 해당합니다. 신도시개발 프로젝트 및 공단 인프라개발 프로젝트는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단지개발 프로젝트는 사업부지에 면적에 따라서 최소 15% 또는 20%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즉, 부동산중개업이나 부동산 감정평가업 등은 최소 자본금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10

일반용지, 산업공단(IZ), 수출가공공단(EPZ), 경제특구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2007년 10월 4일

R 회사는 한국에서 세척장비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06년부터 국내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중국으로 진출할까 고민하던 중, 중국에 진출했던 지인으로부터 중국의 투자환경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많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이 도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도에 있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는 신문과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을 포함해 많은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베트남으로 진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조공장을 지을 공장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지역으로 공장을 지어야 유리한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반용지는 토지임차료가 낮으나 물류여건이 낙후되어 있고, 인프라 정비를 직접해야 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한 부담과 투자허가를 지방 인민위원회 투자계획부(DPI)에서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공단(IZ)과 수출가공공단(EPZ)은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며, 수출과 내수 모두 가능한 지역이며 일반용지보다 상대적으로 임차료는 높으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으며 물류여

건이 양호합니다. 투자허가는 해당성에 공단관리위원회(BOM)에서 모든 허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제특구는 100% 수출업체만이 입주 가능하고 남부 1개, 북부 1개를 제외하고 중부에 7개의 경제특구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한국기업은 전량 수출을 해야 하는 경제특구보다 산업공단(IZ)에 제조공장 부지를 임차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는 경제특구가 중부지방에 밀집되어 있어 Dung Quat 중화학 집중 특구를 제외하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인세의 우대세율도 산업공단(IZ)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용지는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낮은 토지임차료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가 장점이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토지보상 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토지개발과 허가시 관련 부서의 업무가 많거나 비협조적일 경우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법인세의 우대세율은 경제특구는 법인세 10%의 우대세율을 15년 간 적용받게 되며,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자재는 5년 간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산업공단(IZ)과 수출가공공단(EPZ)에 투자하는 제조기업은 자동적으로 일반우대산업 및 우대지역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으로 15%의 법인세율을 12년 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지역은 법인세의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사례

Tip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제조 기업의 공장부지 선정을 보면 단연 산업공단(IZ)에 공장부지를 임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목적과 투자분야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으나 일반지역에 비해 신경 쓸 것이 많지 않고 공단관리위원회(BOM)에서 인허가 및 모든 부분의 협조가 이루어지며, 전기, 통신, 용수 등의 인프라가 양호하고 물류여건(도로사정) 등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상담사례 11

호치민시의 아파트와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나 되는지요.

2008년 8월 6일

W 회사의 L 사장님은 무역업과 서비스, 유통시장의 진출을 위해 베트남에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현지 생활 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부터 베트남의 유통시장과 서비스시장이 개방되기 때문에 사전에 거주를 하면서 시장조사와 법인설립, 허가 등을 병행하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L 사장님은 현지 생활 시 지출되는 고정비용의 산출에서 가장 큰 부분은 주택임차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급 아파트의 30평 기준으로 방 3개가 있는 아파트의 월 임차료는 3500불 정도입니다.

호치민시의 경우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전용 아파트에서 부터 일반주택까지 임차할 수 있는 주택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상사 주재원들은 평균 2000불~3000불 정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호치민시의 1군 지역의 아파트는 30평을 기준으로 3000불 이상이나, 10~20분만 벗어나면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나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의 아파트 임차료는 월 800불에서 1800불 정도이며,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2~3층 정도가 800불에서 2500불 정도임

니다. 이 외에도 500불에서 1000불 정도 되는 저렴한 주택이 다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비가 없는 단독주택보다 관리사무소와 경비가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임차 후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외국인 거주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Tip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주재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접 운전을 하고 운동을 가거나, 가족들을 태우고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베트남에는 시내 곳곳마다 오토바이가 많고, 아직까지 운전자들의 질서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아 교통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끼어들거나 차선을 마음대로 바꾸고 커브길이나 건널목 등에서 추월하는 등, 곳곳에 사고의 위험이 많습니다. 외국인의 자동차 운전 시 약간의 접촉사고만 나도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12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07년 11월 27일

T 건설사의 B 이사님은 1년 전부터 베트남에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를 10차례, 호치민을 11차례 다니면서 많은 한국 기업의 주재원과 한국 관련 기관, 베트남 관련 기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부동산개발 및 투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T 건설사의 B 이사님이 베트남 출장 시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과 베트남 사람 모두 베트남 투자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략 이렇다더라만 할 뿐, 정확한 근거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취득절차를 알 수 없어 매우 궁금하였습니다.

외국인은 투자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토지사용권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많은 기업인이나 교민분들도 베트남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때로는 법률적인 문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경제적인 분위기로 이해하고, 베트남 공무원이나 지인의 말만 듣고 믿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트남 헌법 제17조, 토지법 제5조, 민법 제200조에 베트남의 토지

는 토지 소유자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국가와 인민의 소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트남인은 국가로부터 토지법 제9조에 의거하여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데, 국가는 토지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사용기간 동안에 이전, 임대, 재임대, 상속, 증여, 기부 등을 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베트남인이 주거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 영구적으로 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토지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의 농업, 임업, 제염업, 수산업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 생산 또는 사업설립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사업적인 목적으로 공공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경우, 인프라를 건설하는 경우, 매매 또는 임차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려면 투자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Tip

투자프로젝트의 토지 사용기간은 보통 50년입니다. 투자 자본이 큰 경우나, 자본의 회수가 늦은 프로젝트 등에는 정부가 70년까지 토지사용권의 허가기간을 주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투자프로젝트를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법인의 명의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반영구적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임차권에 준하는 토지사용권을 할당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사용권자에게 토지보상비를 지불해야 하며, 투자자가 토지의 할





당 또는 임대를 위해서 해당 인민위원회의 토지 회수 결정 (토지법 제32조)이후에 가능하며, 기 승인된 프로젝트는 인민 위원회에서 투자자로부터 보상비를 토지사용권자에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한 후 토지를 할당합니다.(토지법 제41조 2항)

상담사례 13

유한회사의 청산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T 회사는 가방을 만들어 100%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로서 2004년 호치민 인근의 구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국제금융 위기로 수출업체인 일본기업의 부도를 맞아 더 이상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들어 회사를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T 사의 P 사장님은 법인을 해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기업이 해산되는 조건은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나 기업 소유주의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기업법 제157조)

회사의 청산이란 해산된 회사의 재산 및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회사의 법인자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일반

적으로 법인의 자격을 소멸하는 것을 해산이라고 하고, 해산된 회사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청산은 기업의 파산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기업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적자로 채무초과 상태를 보일 때 이해관계자와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내리는 결정을 파산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기업법의 상의 해산되는 조건은 회사정관 상에 기재된 활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소유주,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또는 기업 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 결정에 따라 회사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법에 규정된 최소 사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된 경우, 기업은 채권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를 보장했을 시 해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해산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기업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업의 해산결정 후 의사결정 기구에 의한 의결, -청산인 혹은 청산관재인의 선임, - 투자허가관청에 통지,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직원에게 대한 통지 및 공고, -세금 및 채무변제, -변제완료 후 투자허가기관에 통보, -사업등록의 취소, -해산완료 등의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기업이 해산되는 조건 및 경우(기업법 제157조), 기업의 해산 절차(제158조)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및 채무의 변제를 완료하고도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 투자허가관청에서 기업의 해산조치를 내려주지 않는 경우는 투자자의 책임사항으로 남게 되기도 하므로 해산조건 및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상담사례

TIP

유한회사의 소유주 및 사원은 정상적으로 청산 절차를 이행 하였을 경우에 더 이상의 책임이 남지 않으나 기업법의 시행령에 따라 유한회사의 소유주들은 제출한 청산관련 서류들의 정확성을 담보할 책임이 있으므로 변제되지 않는 채무나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며, 서류 제출일로부터 3년 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산결정 이후에 청산절차가 이루어질 때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미리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해산결정 후 6개월 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회사의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14

유통업,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을 100%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요.

2008년 3월 3일

요즘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B.B.Q 치킨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베트남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업종(소매, 유통업)의 롯데마트가 12월 중순경 호치민 1호점의 개장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베트남 마트시장을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는 베트남에서도 통한다는 지론을 갖고 한국의 많은 서비스, 유통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사장님들은 베트남 서비스, 유통시장의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H 사의 C 사장님 또한 한국에서 국수전골(샤브샤브)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베트남 쌀국수를 이용한 프랜차이즈를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개점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프랜차이즈업종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009년부터는 100%로 단독으로 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나, 올해까지는 지분제한이 없이 허가를 취득한 베트남 기업과 합작을 통해서 회사설립이 가능합니다.

2006년 11월 베트남이 가입한 WTO 양허안의 서비스업 스케줄에 보면 유통업,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은 가입한 첫해에는 49% 이내로 지분을 참여한 합작회사로 베트남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2008년도에는 지분의 제한이 없는 합작회사의 형태로 가능하고, 2009년부터 100%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베트남에 서비스업종으로 진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허가를 가진 베트남 기업과 합작을 통하여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식당, 미용실, 레스토랑, 모텔, 네일아트샵, 슈퍼마켓 등 서비스업종은 합작을 통하거나 베트남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에서도 담배, 도서, 신문, 잡지, 동영상, 귀금속, 의약품, 폭발물, 기름, 쌀, 설탕 등은 제외되었으며, WTO에 가입 후 올해까지는 외투 기업은 시멘트, 시멘트 벽돌, 타이어, 철, 철강, 음향영상 기구, 종이,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포도주, 술, 비료 등은 유통이





불가하며, 2009년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업은 가입 3년 후부터 지점(branch) 설립도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Tip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인근의 신발 회사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라벨을 부치는 작업을 한 후 다시 납품을 하는 형태도 서비스업에 속하게 됩니다. 많은 한국의 사장님들은 제조업으로 생각을 하고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은 엄격히 재료의 소유권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료의 소유권은 이미 가공을 의뢰한 기업에 있고, 단순 가공을 한 후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는 서비스업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15

베트남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기업을 인수 · 합병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008년 9월 17일(수)

베트남에 진출하는 다수의 한국 기업은 요즘 베트남에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기업을 인수 · 합병하는데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 회사는 한국에서 의류 제조 및 유통을 하는 업체로서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화 추세에 있는 패션 산업에 베트남 소비시장을 타깃으로 여러 방면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5년 이후의 출생자가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베트남의 의류, 패션시장은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베트남 기업 중 인지도가 있는 패션브랜드를 가진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투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투자자는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을 위해 타 기업에 출자, 주식 매입 또는 기업을 인수합병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출자, 주식 매입, 기업 인수 및 합병하는 일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기업은 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기관에 사업자등록을 시행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투자프로젝트 조정절차라 하여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장소, 형식, 자본, 진행기간 등을 조정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승인 허가서 조정을 위해 서류접수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고(투자법 시행령 제51조) 조정 절차를 마치면 조정 등록 및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프로젝트 조정 등록에 속하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목표, 규모, 시행 장소, 투자형식, 자본, 진행기간 등을 조정할 후투자자본 규모가 3000억





베트남 동 미만인 조건부 투자분야에 속하지 않는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조정 등록을 받게 되고, 투자프로젝트 조정내용 승인 등록서, 투자승인 확인서 사본, 합작계약서, 경영협력계약서, 기업정관 개정 보완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은 접수 후 15 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조정된 투자 승인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후에 조정 심사를 받게 되고 서류를 접수한 발급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정 내용을 심사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조정, 등록, 심사를 마친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외국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인수·합병 할 경우,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투자 수속을 진행하여야 하며, 기업 인수·합병 신청서에 외국투자자의 성명, 주소 및 대리인, 인수·합병 대상 기업명, 주소, 정관자본금, 영업분야, 인수·합병 내용에 관한 정보, 제안서, 기업 매각에 대한 사원총회, 기업 소유주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서, 피인수 회사의 정관, 변경사항이 있을 시 인수·합병 승인 이후 기업의 정관 등을 작성,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기업의 흡수합병시 합병된 회사가 관련시장의 30~50%를 점유하게 되면 회사의 법적대표는 합병을 진행하기 전에 경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합병 후 회사가 관련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금지합니다.

투자승인서를 발급 받은 투자프로젝트의 경우, 투자법 제21조 직접투자 형식의 7항 기타 투자 형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투자기업, 경영협력계약 당사자, 합작기업 등은 투자형식 변경 서류를 투자승인 확인서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외국 투자프로젝트의 투자형식 변경절차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발급기관은 30일 이내에 투자승인 확인서 조정을 결정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투자법시행령 제57조)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도 유한책임회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하는 회사는 사원총회, 회사 소유주 또는 주주총회는 본 법과 회사정관에 따라 회사의 전환결정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결의안 통과 1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전환된 회사는 법적 권리와 이익을 계승하며, 미지급 채무, 근로계약, 기타 재산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기업법 제154조)





상담사례 16

지적재산권의 침해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U 사는 정수기를 제조, 생산 및 판매하는 업체로서 한국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며, 베트남의 시장 진입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WTO 가입에 따라 베트남의 유통, 판매시장이 2009년에 개방이 되므로 미리 지식소유권에 대해서 베트남 특허청이나 베트남 지적재산권 사무소로부터 등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사 담당 C 과장은 지적재산권의 피해 시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미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적재산권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구제, 민사소송, 형사처벌, 수출입통제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지식소유권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에는 자위권이라 하여 지식소유권 주체는 자신의 지식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소유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지식소유권 침해 행위를 한 조직 및 개인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며 공개적으로 정정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관리기관

에 지적소유권 침해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지적소유권 제198조)

지적재산권의 침해 시 타 조직 및 개인의 침해 행위를 한 조직 및 개인은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 민사, 형사, 행정구제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베트남인들은 오랜 기간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모르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침해행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처리방법은 행정구제를 선행하는 것이고 이보다 먼저 베트남 특허청이나 저작권사무소로부터 미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처리 권한이 법원, 감사기관, 시장관리기관, 세관, 경찰, 각급 인민위원회에 있으며, 민사, 형사 방법의 적용은 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행정적 방법의 적용은 감사기관, 경찰, 세관, 시장관리기관, 각급 인민위원회에 있으며, 이 기관들을 통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저지방법 및 행정처벌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상품의 감찰방법 적용은 세관에 있습니다.(지적재산권 제200조)

행정구제는 특허청이나 저작권사무소로부터 침해에 따른 공식의견서를 취득한 후, 침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장이나 시정요청서를 송부하고 정부기관에 행정처벌을 요청합니다. 행정구제의 장점은 신속하고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수입되고 있다고 의심되면 세관에 대상 상품가치의 20%(최소 2000만 동 공탁 또는 은행보증서)를 공탁하고 해당 지방 세관의 통관사무국장이 임시통관정지나 상품수색 등을 진행하며 수출입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지적재산권의 구제는 법원이나 중재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





사처벌을 원할 시에는 침해자가 베트남 1000만 동 이상의 이익을 향유한 경우나 산업재산권 보유자에게 5000만 동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재산권의 가치가 베트남 5000만동을 초과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Tip

지적재산권의 침해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정구제로써 베트남 특허청이나 저작권사무소의 의견서를 근거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의 주체는 특허청이나 관련기관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적소유권의 저작권 대상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을 포함하고, 저작권관련권 대상은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 공업소유권 대상은 발명, 의장,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표식이며, 재배식물 종자권 대상은 재배식물 종자 및 번식 물질입니다.

상담사례 17

현지 법인장이 퇴직을 하여 변경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2008년 11월 5일(수)

금년 하반기에는 베트남의 부동산, 건설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아 위치가 탁월한 주택이나 A급 아파트,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는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K 사는 현지에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위해, 금년 초에 법인을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진행 도중에 법인장이 퇴직을 하여 법적대리인의 변경등록을 하려 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법적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결정일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성급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적대리인의 신고 시, 신고서 내용에 회사 상호, 회사의 본사 소재지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발급일 등을 작성하여야 하고, 기업의 현 법적대리인과 대체 예정 법적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기입하며, 2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의장, 1인 유한회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장의 성명과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수정 회사정관 사본과 2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1인 유한회





사의 경우 회사 소유주, 사원총회, 혹은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회의록, 서면결의안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기관은 신고서 접수 후, 접수확인증(영수증)을 발급하고 회사가 법적대리인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회사의 법적대리인 변경등록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등록에 관한 시행령 제29조)

상담사례 Tip

회사는 정관자본금을 증·감자하거나 출자자본비율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사업자등록기관에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의 내용은 기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2인 유한회사는 사원전체, 주식회사는 창립주주의 출자지분비율, 1인 유한회사는 회사소유주, 주식회사의 경우 창립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과 수입대표자에 위임된 보유비율, 등록정관자본금, 증·감자 예정 정관 자본금, 시행기간 및 증·감자방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수정된 회사정관 사본을 첨부하고 사원총회, 주주총회의 결정서 및 결의사항을 기업정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1인 유한회사는 정관 자본금의 증자는 가능하나, 감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18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증명서를 받고 투자프로젝트의 내용이 변경될 시, 변경절차와 투자프로젝트의 활동기한, 투자증명서가 회수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2007년 6월 22일

H 사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행하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토지를 확보 하였으며, 투자허가증명서, 즉 프로젝트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서 절차를 확인하는 중이며, 사전에 계획하였던 공사기간이 늦어질 전망이고, 법인설립 및 관련 허가 등도 예정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변경은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성급 투자 관리 국가기관(인민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투자법 제51조)

외국자본이 출자된 프로젝트의 변경이 있을 시, 투자프로젝트의 목적, 규모, 장소, 형식, 자본, 기간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투자자는 독립적으로 변경 내용을 결정하고, 변경 결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성급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투자심사 대상에 속한 프로젝트는 투자자가 해당 관할 투자관리 국가기관별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신청





서는 프로젝트 실행 상황, 변경 사유, 기 심사 내용과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관리 국가기관은 구비한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증명 변경에 대해 투자자에게 통보합니다. 투자프로젝트의 변경은 투자허가증명서의 내용을 변경, 보충하는 형식으로 시행됩니다. 프로젝트의 활동 기한은 50년이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프로젝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7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허가증명서가 회수되는 경우는 증명서가 발급된 지 1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능력이 없다면 투자증명서를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프로젝트를 일시 중지하게 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투자관리 국가기관(인민위원회)에 통보하여 프로젝트 일시 정지 기간 동안 토지임대료의 면제, 감면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투자법 제52, 64조)

상담사례

Tip

투자프로젝트를 진행 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토지 임대, 교부 및 인수에 대해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 지역 관할 토지 관리 기관과 접촉하여 토지 교부, 임대 절차를 진행합니다. 투자자가 토지를 이미 교부 받았으나 규정된 시한 내에 프로젝트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하고 투자허가증명서도 회수하게 됩니다.(투자법 제55조) 또한 개발 계획의 시행이 확정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둘 이상의 투자자가 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 입찰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프로젝트 실행 투자자를 선정합니다.(투자법 제54조)

상담사례 19

건설업체의 법인설립과 Project Office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7년 11월 9일

P 건설사는 협력업체가 하노이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지 베트남에 시공부분에 참여를 희망하여 베트남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일반건설 및 토목건설의 시공부분은 건설관련 서비스업종에 속해 법인을 설립하여 공사를 진행하든지, 외국인 개별시공허가를 받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설법인과 프로젝트오피스의 활동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2008년 현재 베트남에서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법인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법인의 설립이나 Project Office(대표사무소)형태의 활동으로 개별시공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WTO 가입 양허안에 일반건설업, 일반토목업, 설치 및 조립업, 건축물 완공 및 마무리작업, 기타 건설관련 서비스업은 2009년까지는 100% 단독법인의 설립은 가능하나, 외국인 프로젝트에 한하여 시공이 가능하고, 2010년부터





는 지점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한 마디로 외국건설사의 경우 단독, 합작법인의 형태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건설법인이며, 법적인 지위를 보유하지 않고도 개별적인 시공허가(라이센스)를 받아 건설활동을 하는 것을 프로젝트오피스(개별 시공허가) 성격의 건설활동이라고 합니다. 건설법인은 계속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보유하며 베트남에서 건설활동을 하며, 대표사무소 형태의 프로젝트오피스는 계약시 마다 개별시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베트남에서 외국 건설시공회사의 경우는 시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베트남 현지 건설사와 파트너십 형태의 계약서나 1개 이상의 베트남 건설사에 하청을 주어야 하며 하청계약서가 허가서류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건설법인의 설립과 프로젝트 오피스 형태의 대표사무소 설립서류는 신청서, 창립사원명단(투자자), 현지 정관, 본사의 정관, 발주처와의 계약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타당성 조사서, 임대차 계약관련 토지사용권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2년 간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은행이 발급한 재정능력 증명서, 회사브로슈어, 시공 및 경력증명서, 설계담당자의 기술자 자격증, 위임장, 대표자 여권, 대행 위임장, 각종 면허 및 자격증 등을 각각 영문,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공증받고, 영문은 외교통상부 영사확인과에서 확인도장을 베트남어는 베트남대사관에서 확인 후 법인의 경우는 투자계획부에 대표사무소는 무역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베트남 건설법 No.16-2003-QH11은 2003년 11월 26일 제정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토지법과 함께 베트남의 부동산시장을 성립시키는 기본법규입니다. 건설법상 건설업을 담당할 계약자의 선정방식은 경쟁입찰, 제한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의 규모, 특성 그리고 건설을 위한 자금의 원천에 따라 발주자는 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발주하는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공공프로젝트 및 정부가 3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또는 지분 참여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계약 및 대금지급방식은 민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법에는 시설에 대한 하자보증에 관하여 시공사에게 하자보증 의무를 부여하고,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설비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서 정부가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20

1인 유한책임회사의 권리 및 의무,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7년 10월 8일

L 부사장님은 공조기계를 제조, 생산 및 설치하는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부쩍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늘어나고 특히, 건설사들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에 진출하여 공조기계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투자법규 상 법인의 형태 중 투자자가 1인인 유한회사의 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소유주의 권리, 의무 등의 주의사항을 알고 싶어 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하나의 조직 또는 개인이 소유주인 기업을 말합니다. 회사의 소유주는 회사의 정관자본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기업의 채무와 기타 재산적 의무에 관해 책임을 집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법인 자격을 가지며,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소유주가 조직인 경우, 회사소유주의 권리는 회사정관의 내용을 결정하고, 회사 정관을 개정, 보완할 권리와 회사의 연간 발전

전략 및 경영계획을 확정할 권리, 회사의 관리조직구조 및 관리자의 임명, 해임, 면직 등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가장 최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한 그 이하 비율의 투자프로젝트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시장, 마케팅, 기술개발 방법 등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가장 최근 재무제표에 기록된 총 회사자산 가치의 50% 이상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한 대출계약서 또는 기타 계약서의 통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기업법 제64조)

회사 소유주는 약속한 기한 내 자본금을 출자할 의무가 있으며, 약속한 출자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기한 내 출자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채무 및 기타 재산상의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회사소유주는 회사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사 소유주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을 분명하게 구분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 개인과 자신의 가족의 지출과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의 지위로써 지출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기업법 제65조) 소유주가 1인인 유한책임회사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1명 또는 그 이상의 수임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임 대표자의 임기는 5년을 넘지 않습니다. 회사 소유주는 언제든지 수임 대표자를 변경, 교체할 수 있으며, 최소 2인이 수임대표자로 선임된 경우, 회사의 관리구조는 사원총회, 사장 또는 회장, 감사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경우 사원총회에는 수임 대표자 전체가 포함됩니다. 회사의 정관은 사원총회 의장, 대표이사, 사장 또는 회장을 회사의 법적대리인으로 규정해야 하며, 회사의 법적대리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이며, 30일 이상 베트남에 부재할 경우, 회사정관





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타인을 법적대리인으로 서면을 통해 위임해야 합니다. 1인 유한회사의 사원총회는 회사의 소유주를 대신하여 회사 소유주의 권리와 임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회사를 대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소유주는 사원총회 의장을 지명하고, 사원총회 의장의 임기는 5년을 넘지 않으며 재선출 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는 최소 2/3가 출석하였을 때 회의를 진행하고,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사원총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사원총회의 결의안은 총회 출석사원의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통과되고 회사 정관의 수정이나 보완, 정관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체 양도 등은 총회 출석 사원의 3/4가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사원총회의 결의안은 통과일로부터 법적인 가치를 가지나, 회사정관상 소유주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기업법 제68조)

상담사례 Tip

1인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자본금을 감자할 수 없으며, 1인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소유주의 투자 또는 타인의 출자 자본 동원을 통해 법정 자본금을 증자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유주는 정관 자본금의 증자 형식 및 정도를 결정하고 타인의 출자자본 동원을 통해 법정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신규사원의 출자 약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등록하여야 합니다.(기업법 제76조)

상담사례 21

베트남에서 부동산 신도시개발 및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 절차, 소요기간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J 건설사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건설시공을 하고 있으며, 약 1년간의 시공사로서의 업무가 끝나면 소규모 신도시개발이나 건설 프로젝트를 직접 시행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 및 건설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어느 기관을 접촉해야 하고, 절차와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베트남 주요도시의 개발계획과 인프라 건설계획은 도시계획 건축국, 투자계획국, 건설국, 교통국과 관련있으며, 토지사용권 증서와 주택소유권증서는 자원환경부동산국에서 발급합니다.

먼저 해당 토지의 등기권리증인 토지사용권 증서와 주택소유권 증서를 해당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시·성의 인민위원회 자원환경부동산국에서 확인하고, 개발계획은 도시계획 건축국, 도시계획과 무관한 개발사업은 건설국, 교통국을 통해서 1차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인프라 건설계획은 5년 단위로 건설부에서 발표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려는 투자자는 스스로 또는 현지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해당 부





지 확보를 위한 조사를 선행해야 하며, 해당사업 부지가 확보되면 100% 단독으로 진행할 것인지, 합작투자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 해서 해당 시나 성의 자원환경부동산국을 통하여 직접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작투자시는 베트남측 파트너의 토지사용권을 법정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형식을 결정합니다. 시장조사와 부지확보까지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1~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에 해당 시나 성의 인민위원회 도시건축국에 해당 부지의 신청서,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부지관련서류 등 기초사업계획 및 설계, 레이아웃을 제출하여 허가를 취득하게 되며, 약 2~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후에 투자계획부에 법인설립 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100% 단독투자일 경우에 정부기관과의 임대계약서를, 합작일 경우 파트너와의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며,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 투자계획부에 법인서류와 토지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투자승인과 토지의 합법화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토지의 면적, 위치 등에 관한 서류와 재무부가 규정한 가격표에 기초한 토지임차료, 철거방안, 보상방안, 토지임대 계약서, 합작일 때는 합작계약서가 필요하고 투자승인 후 토지등록사무소에 토지사용권을 등록하고 재정의무 이행 등록을 합니다. 이때 소요기간은 약 3~4개월 정도입니다. 이후 투자허가 및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며, 해당 시나 성의 인민위원회 투자계획부(DPI)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소요기간은 약 3~4개월 정도입니다. 법인의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개최 및 회의록을 DPI에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임원등록을 법인설립 후 즉시 관할 경찰국에서 인감도장을 신고하며 수령하고,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세무국에 세무코드와 회계책임자를 등록 합니다. 건설관련 허가사항으로는 시·성 무역국에 자재수입계획을 등록(1~2개월 소요), 토지등록사무소에 토지사용권등록(약 3개월소요), DPI에 공사관련 입찰진행 및 결과를 보고(약 3개월 소요),

건설국에 기술설계 및 건설원가를 보고하고 승인(약 3개월 소요)받고, 해당 건설국에 시공허가(약 1~2개월 소요)를 취득합니다. 이후에 건설착공 및 분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확보부터 건설착공까지는 약 1년 이상이 소요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Tip

베트남 내의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원청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 법인의 설립 없이도 외국인 개별 시공허가를 취득한 후에 Project Office를 현장에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 시공허가를 받게 되면 베트남 회계시스템이나 베트남 회계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원청사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혼합된 방법으로 법인세는 원천징수, 부가세는 베트남 회계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22

베트남의 WTO에 가입후, 서비스업종의 업종별 개방 스케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7년 8월 29일

W사는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하노이 인근에 휴대폰 부품공장과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계열회사 또한 건설관련 서비스 업종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베트남이 2007년 1월부터 WTO에 가입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정확하게 어떤 업종이 언제 완전히 개방이 되는지 분야별 개방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영서비스 업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건설 관련 서비스 업종, 유통업종, 교육서비스 업종, 금융 관련 서비스 업종, 보건 관련 서비스 업종, 관광 서비스 업종, 오락·레저서비스 업종, 운송 서비스 업종, 기타 운송보조 서비스 업종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회계·감사서비스는 특별한 제한이 없이 사업이 가능하며, 세무서비스는 가입 후 1년 간은 건별로 허가하고 재경부가 서비스 공급자 수를 결정합니다. 건축 서비스와 토목, 공학 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 등은 베트남이 WTO 가입 후 2년간은 100% 단독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나, 100% 외투기업에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컴퓨터 관련 서비스는 2년 간 외투기업에만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고 3년 후부터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개발 서비스는 제한사항이 없으며, 항공기 분야의 대여 및 리스서비스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운용 서비스에 포함하지 않은 기타 기계 및 장비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대행 서비스는 2009년 1월 1일부터 합작회사의 법정자본금 출자한도 비율 51%가 폐지되며, 경영컨설팅 서비스는 2010년부터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지점 설립도 가능합니다. 농업·수렵·삼림에 관련된 부가서비스는 51% 이내로 합작투자가 가능하고, 광업관련 서비스는 3년 간은 49% 이내 합작으로, 2010년부터는 51% 이내로, 그 2년 후에는 100% 외투 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 컨설팅 서비스는 2010년까지 51% 이내의 합작회사가 가능하고 2011년부터는 100% 단독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기계 및 장비의 보수 서비스는 2009년부터 50% 이내의 합작이 가능하고, 2014년부터 100% 외투회사가 가능합니다. 책자나 카달로그 등의 배송을 제외한 소형화물, 서한 등의 배송업은 2011년까지 51% 이내의 합작회사가 가능하며, 2012년부터 100% 단독법인이 가능합니다. 음성전화, 팩킷 스위치 정보 전송, 영상회의 서비스, 비디오 전송 서비스, 무선전화 등의 비시설물 기반 서비스는 2009년까지 51% 이내의 합작법인 설립이 2010년부터는 65%까지의 외투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위의 통신서비스 중에 시설물 기반 서비스는 2009년까지 49% 이내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65%까지의 합작회사가 가능합니다. 비주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비시설물 기반 서비스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 후 70% 이내의 합작으로, 시설물 기반 서비스는 49% 이내의 합작회사의 설립이 가능 합니다. 이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검색, 전자 정보 교환 등 부가가치 비시설물 기반 서비스는 2009년까지 51% 이내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65% 이내의 외투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중에 비시설물 기반 서비스는 2009년까지 51% 이내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는 65%까지의 외투회사 설립이, 시설물 기반 서비스는 WTO 가입 후 50% 이내의 합작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영화 생산 서비스, 영화 유통 서비스는 베트남이 WTO에 가입 후 51% 이내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건설업, 토목업, 설치 및 조립업, 완공 및 마무리 작업, 기타 건설 관련 서비스는 WTO 가입 후 2년 간(2009년까지)은 100% 외투기업은 외투기업 또는 외투 프로젝트에만 서비스제공이 가능하고, 3년후인 2010년부터 지점설립이 가능합니다. 유통대리업,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은 2009년부터 100% 단독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하고 2010년부터 지점 설립도 가능합니다. 2009년부터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유통대리업도 가능합니다. 교육업종의 서비스 분야도 2009년부터 교육부의 승인을 취득한 후 100% 단독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병원 및 치과서비스는 100% 단독으로 가능하나 최소법정자본금이 존재하며, 종합병원은 2천만 불, 외래진료의원은 2백만 불, 전문의원은 2십만 불의 자본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행사는 지분제한이 없는 합작회사가 가능하고, 전자게임장 등의 오락서비스는 49% 이내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Tip

보험 관련 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생명보험, 비생명 분야 보험, 보험중계업 등이 가능하나 외투업체는 자동차 3자 책임 보험, 건설관련 보험, 석유 및 가스 관련은 불허하며, 2012년부터 비생명 분야의 지점 설립이 가능하나 재무적 규제사항이 존재합니다. 증권업 서비스도 2011년까지는 대표사무소 또는 49% 미만의 합작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2012년부터 지점설립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23

법인의 설립 후에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와 절차는 무엇인지요.

2007년 7월 19일

K 사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지역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법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법무법인을 통하여 인허가 서류를 전달한 상태이며, 8월 경에는 법인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법인의 설립 허가가 나고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설립 후에 가장 먼저 신문에 설립공고를 하고 관할 공안국(경찰서)에 법인도장을 신청, 수령 합니다.

투자법인의 허가서가 발급이 되면 사업자번호(TAX CODE)를 수령하게 됩니다. 법인은 신문에 법인의 설립을 공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국에 TAX CODE를 등록하고 회계장부를 개설, 관할 공안국(경찰서)에 법인도장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사무실 가임대 계약서 또는 토지임대 가계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하고 투자허가서 발급단체에 주요 직원을 등록합니다. 이후 법인계좌(달러, 동화)를 개설하며, 공장설비 및 자재 리스트를 무역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하고 공장 설계평가 및 건축허가를 건설국에 신청하고 회사의 취업규칙(노동규칙)을 노동부에 등록





합니다. 이후에는 직원과 근로자들의 관계된 채용 시의 건강검진, 채용 근로자 명단을 노동국에 통보하고 한국 직원 및 외국인 직원의 노동허가서를 노동국에 제출하며, 이민국과 경찰서에 거주자를 등록합니다. 법인 및 공장의 운영전에 근로자 채용이 완료 되었으면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사조정협의회구성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상담사례 Tip

법인의 설립후에 기업은 세무국(TAX CODE 등록), 공안국(법인도장 신청, 수령), 노동국(근로자 명단 통보 및 직원의 노동허가서 발급, 취업규칙 등록), 건설국(공장 설계 평가 및 건축허가), 무역국(공장설비용 자재 신청)에 기업과 관련된 일련의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자칫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법인 설립전부터 세밀하게 체크하시어 성공적인 법인 운영에 첫발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법인운영



인사, 노무





상담사례 24

외국 투자기업의 근로자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2008년 10월 17일(금)

10월 기업의 경기실사지수는 세계적인 금융불안에 따른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할 것 없이 모두 하락하였고, 11월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국내 주식시장과 환율시장 등을 지켜보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며 베트남 진출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K사는 냉각탑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O사는 계량기를, T사는 섬유를 제조하는 회사, A사는 전자부품중 스크류를 제조하는 회사로 모두 내년에 베트남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이 평균 20% 인상되었습니다. 호치민시와 하노이시가 100만 동(약 62.5달러)에서 120만 동(약 72.6달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그룹도 기존의 3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외국투자기업의 최저임금은 호치민, 하노이시가 100만 동(약 62.5불), 하노이, 호치민시 외곽지역과 하이퐁시, 꽝닌성의 하롱시, 동나이성, 빈즈엉성, 붕타우시 등이 90만 동(약 56.25불), 기타지역이 80만 동(약 50불) 정도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하노이시, 호치민 시내 각군이 120만 동(약 72.6불), 호치민시, 하노이시 외곽, 하이퐁시, 다낭시, 꺄터시, 동나이성, 빈즈엉성, 붕타우시가 108만 동(약 65.4불), 하노이시 기타지역, 박닌성, 박장성, 흥옌성, 하이즈엉성, 빈푹성, 하이퐁시 기타지역, 꽝닌성, 랍동성, 칸호아성, 따이닌성, 빈즈엉성 및 동나이성 기타지역, 룡안성, 붕따우성 꺄터시 기타 지역 등은 95만 동(약 57.5 불), 기타지역은 92만 동(약 55.7불)로 4개 권역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내년에 하노이시 박닌성과 박장성, 흥옌성, 하이즈엉성으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최저임금은 95만 동, 약 57.5달러 정도로 상대적으로 호치민시 인근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비해서 약 8불 정도가 짝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고급인력의 부족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인재에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며 스카우트를 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 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이러한 고급인력 채용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진출 전 채용하여 교육시키는 방안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담사례

TIP

베트남은 호치민시와 하노이시가 전국 일자리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도시 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건설, 조립생산, 기계류, 석유화학분야 등에 종사하고, IT분야에는 인도인이, 건설부문에 일반 노동자들은 태국,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근로자들이 현지 베트남 근로자들의 평균 2배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이나 성실한 근무자를 회사에 장기간 근무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나름대로 타 회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우와 이용하는 식당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월별 또는 분기별 우수사원에 대한 포상, 소년·소녀가장의 장학금 제도 신설, 해당 성의 불우이웃돕기 등의 자그마한 정성이 직원들에게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해당 성을 감동시켜 회사에 엄청난 재산과 이익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꼭 전해드리는 말입니다. 관련기관의 공무원과 식사를 자주하는 것보다 꾸준히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관리하는 것이 회사에는 성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트남에서 성공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상담사례 25

파업을 예방하려면...

2007년 6월 11일

중국에 진출했던 많은 한국 기업에게 중국 근로자들은 어떠냐고 물으면 말도 하지 말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의 대다수가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노무관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은 것에서 기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환경과 습관이 다르고 사회주의 영향으로 노동관습이나 노동문화가 상당히 수평적인 근로자들을 단숨에 한국 기업가의 사고로 전환 시킨다는 것은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K 업체의 M 사장님은 차량공조기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근로자들의 파업을 경험하였고, 생활과 문화적인 환경이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노무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베트남 근로자들의 노동관습과 파업대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평등의식이 노동관습이나 노동문화에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의 근로자는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료앞에서 꾸중을 듣는 것을 큰 모욕으로 생각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합니다.





파업의 가장 큰 원인은 최근 가파른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임금 인상 요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관리의 소홀함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금 인상이야 그렇다 치고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노무관리를 잘 할 수 있냐 하겠지만, 노무관리를 잘하는 기업은 임금 인상 요구로 파업이 발생하는 타 기업에 비해 같은 임금 수준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파업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가나 주재원들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은 본인이 실수나 잘못을 해도 웃음으로 대신하거나 시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주의 평등의식 속에 존재하는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 한국의 기업가나 주재원들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베트남 근로자들이 알아 듣지 못하는 한국말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자고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기업가나 주재원들이 솔선수범하고 노력하는데 근로자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식 노무관리를 빨리 터득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무관리와 근로자들의 파업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회사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근로자들이 보는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나 지시가 규정화되고 그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문서로 남기어 만약에 있을 분쟁에 대비하고 노동부에 제출하는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말도 없이 결근이나 조퇴를 하였을 시, 화를 낼 필요없이 조용하게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위로를 한 후에 반성문이나 시말서를 쓰게 합니다. 시말서는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습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나 근로자가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도 제출 근거가 되어 부당해고의 사유나 배상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노동조합

을 회사 내에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협조적인 노동조합이지만 항상 합리적인 경영으로 근로자를 대한다는 사실을 노동조합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 하고, 주기적으로 한국직원의 교육을 통해 베트남 근로자와의 원만한 교류를 유지하도록 하며,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사내 교육을 주별, 월별로 실시하여 애사심을 고취시키고,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이나 복지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은 한국 주재원이나 대표이사가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잠을 자고, 어디에서 식사하고, 취미가 무엇인지, 누구와 술마시러 가는지 등을 궁금해 하기도 하고 때론 어제 무엇을 했는지 알기도 합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내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공장 주변을 자주 돌아보고, 근로자들이 식사하는 식당도 청결하게 유지하고, 휴식공간이나 휴게실 등을 잘 꾸미고, 월별이나 분기별로 불우한 직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도 건내고, 가장 먼저 출근은 못해도 항상 정해진 시간에 회사나 공장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근로자와 퇴근하는 근로자를 마주하고 술선수범하면 베트남 근로자들은 오랫동안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고, 파업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호치민 정신에서 기인하는 베트남식 사회주의 노동관습입니다.

상당사례 Tip

베트남에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는 회사내규입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근무정책, 근로시간, 휴식시간, 연장근무, 휴가, 회사내 질서와 업무규칙, 노동위생과 안전, 취업규칙 위반행위,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등을 정확하게 작성을 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취업규칙을 어겼을 시 근로자 해고에 대한 내용과 징계 등을 명확히 작성,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26

한국에서 파견되는 직원의 노동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0월 27일(월)

N 회사는 한국에서 도료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로 금년 초에 외국계 회사와 합작으로 호치민 인근의 산업공단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중부지방에 바이어가 많이 진출하고 있어 중부지방에 유통 법인의 설립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N 사는 관리급 직원의 파견을 위하여 베트남 노동부에 노동허가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법인장은 노동허가가 필요 없으며, 본사에서 파견되는 주재원은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하며,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허가의 면제 대상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유한회사의 지분소유자(사원), 1인 유한회사의 소유주, 합자회사의 경영진 멤버, 서비스 판촉 목적의 외국인, 긴급 기술지원을 위한 외국인 전문가, 허가를 받은

외국인 변호사 등입니다. 한국의 모기업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모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여야 노동허가 발급 대상이 되며, 채용 직후에 현지 파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본사 발령장, 범죄기록증명서, MOLISA 소정양식에 의한 이력서, 건강증명서, 전문기술능력을 증빙하는 자격증, 학위증 사본, 학위가 없으면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컬러사진 3장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체 관리직에서 최소 20%는 베트남 근로자로 충원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와 함께 노동허가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개시 최소 20일 전에 관할 노동국에 노동허가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당국은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노동허가를 발급해야 하며, 노동허가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의거하여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존 노동허가 기간 중에 타 기업으로 회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제출서류를 갖추어 새롭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무지를 이탈하여 타 시, 성에서 연속 10일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성에 노동허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당사례 Tip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직원)의 경우에는 기업은 신문에 채용예정 근로자 수, 업무, 기술수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노동국에서는 신문 공고 여부를 확인하며, 제출서류는 MOLISA 소정 양식에 의한 외국인 고용신청양식을 작성하고, 범죄기록증명서, MOLISA 소정 양식에 의한 이력서, 건강증명서, 전문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 학위증 사본, 학위가 없는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컬러사진 3장 등이며 이상 서류는 국내공증과 외교통상부의 영사과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채용된 한국인 직원은 업무상 질병 및 사고가 나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이므로 베트남 현지의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차원에서 민간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례 27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 연령 기준과 근로계약의 형태를 알고 싶습니다.

2007년 8월 9일

베트남의 노동법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에 의거 그들을 고용하는 조직이나 개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직업훈련생, 견습생, 가내근로자 등 법에 규정된 다른 형태의 노동에도 적용됩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값싼 임금과 베트남 근로자들의 근면성, 성실성을 꼽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환경 등도 베트남으로 가장 많이 진출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H 사는 플라스틱 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7년 초부터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하여 투자법규 및 환경 등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H 사의 동종업체 또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과 근로계약에 대해서 하나 하나 파악하며 진출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15세 이상이어야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체, 기관, 조직 또는 개인이 되며, 개인일 경우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법 제6조)

베트남에서 근로계약은 세 가지의 형식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 두 번째는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 마지막은 12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근로계약의 형식이며, 셋 중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노사쌍방이 계약의 기간과 종료시점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이고,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노사쌍방이 계약기간을 12개월에서 36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기간을 정하는 근로계약과 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에 대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서명되지 아니하면 구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이 됩니다. 노사가 기간을 정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서명하게 되면 계약은 1회에 한하여 연장이 되며, 그 이후에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한 경우는 노사쌍방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될 항구적 성격의 근로를 행하게 할 목적으로 12개월 미만 기간의 계절적 사업 또는 특정한 사업 형태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 됩니다. 다만 군 복무 중인 근로자, 육아 휴직자 또는 일시 휴가자를 대체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근로계약은 문서로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를 보관합니다. 그러나 근로가 일시적인 성질을 갖는 경우나 3개월을 초과할 때 또 그것이 가내공업적 성질의 근로일 때 계약은 구두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TIP

사업의 인수, 합병, 분리 또는 분할,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 또는 재산사용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존 근로자 전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인원정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한국에 보내 교육훈련을 시켜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 본사에서 교육훈련을 수료하게 하였으나, 근로자가 교육훈련의 수료 후에 회사를 일방적으로 그만두었을 때 노동법 41조 3항에 의거 정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는 훈련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근로계약의 의무복무 조항에 삽입하고 연대 보증인을 세우게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도덕적, 윤리적 의무감을 유발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28

베트남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7년 6월 27일

S 업체는 한국에서 제지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2006년 말부터 회사의 방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관한 투자를 계

확하고 있는 중이며, 여러 모로 베트남의 투자법과 노동법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고 특히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해외투자팀의 K 과장은 이번주 안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사장님에게 지시받았습니다.

단체협약이란 근로조건, 노동력의 사용 및 근로관계에 있는 노사당사자 쌍방의 권리, 이익, 의무에 관한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에 문서로 합의한 것입니다.(노동법 제44조)

베트남 노동법상 단체협약은 자유의지, 평등, 공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집단과 사용자의 각 대표가 교섭하여 합의된 것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노동법규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노동법령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교섭의 대표는 근로자측에서는 단위노동조합 또는 임시지역의 노동조합 연맹의 집행위원회이고, 사용자측은 사업의 대표자나 사업의 정관에 의한 대리자 또는 대표자입니다. 단체협약의 대표자 수는 양측의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측 대표는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 위원장 또는 동 위원회의 임명장을 갖고 있는 자이며, 사용자측의 대표는 사업체의 사장 또는 사장의 위임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된 협약내용은 사업체 노동조합원의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유효합니다.(노동법 제45조) 각 당사자는 협약의 체결 및 협약의 내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서가 접수되면 늦어도 20일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은 근로의 수행, 근로의 보장, 근로시간, 휴식시간, 임금, 상





여금 및 임금보조금, 근로규범, 산업안전, 위생, 사회보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은 4부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1부,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가 1부, 상위 노동조합에서 1부, 관할 노동관서에서 1부를 보관합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쌍방이 날짜를 명기하여 효력을 합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때는 협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담사례

TIP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체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유효기간을 갖는 협약의 경우에는 3개월 후, 그리고 1년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협약의 경우에는 6개월 후부터 각 당사자는 협약의 수정 또는 보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교섭의 협약이 유효기간의 만료 시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기존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나, 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 3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어떤 교섭을 얻지 못한 협약은 효력은 자동적으로 무효로 처리됩니다.(노동법 제51조) 베트남의 노동형태는 한국처럼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의 개념보다 정규직 형태의 노동을 전제로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단기간 근로자들을 인정합니다. 회사의 노동조합이 우호적이긴 하나 항시 만약에 있을 분쟁에 대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29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지불방식,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7년 6월 25일

오늘은 우리나라의 6.25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아침부터 숙연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하며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J 회사는 1년 전에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에 포장지, 비닐백을 제조,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가 등에 대해서 확실한 취업규칙의 작성과 내용 등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최근에 인근의 한 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서라도 취업규칙에 대해서 작성을 하여 노동관서에 통보하고 근로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주요 사항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은 시간급(시급, 일급, 주급, 월급), 성과급 또는 할당계약급 중 어떤 형태라도 선택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에는 선택된 임금지급방식이 유지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지급방식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표준노동과 함께 임금의 수준과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단위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결정된 임금수준과 등급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성 또는 시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등록하고 사업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 일급 또는 주급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일, 주마다 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불은 15일마다 적어도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1회 또는 2주에 1회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급 또는 할당계약급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는 상호 합의된 바대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가 수개월 동안 진행될 경우에는 달성하는 업무의 양에 따라 매월 임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직접, 전액, 적시에 근무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임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시기에 국립은행이 발표한 이자율에 상당한 합계액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표 또는 국립은행 발행 수표에 의한 임금의 일부지급은 근로자에게 손해나 불편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야 합니다. (노동법 제58, 59조)

초과근로를 한 근로자는 평일은 150%이상, 주 휴일은 200%이상, 공휴일은 300%이상이며, 야간에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의 30%이상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수당, 상여금, 임금인상 등은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에 합의되거나 사업체 내규정관에 의해 결정됩니다.(노동법 제61, 62, 63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근무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은 노동사회보훈부 및 보

건부에서 정한 과중,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이 단축되어야 하며, 사용자 및 근로자는 초과근무에 합의할 수 있으나, 1일 4시간,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노동조합총연맹과 사용자 단체의 협의를 거쳐 특정한 경우에는 1년에 300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정부가 규정한 지역 기후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또는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합니다. 8시간을 계속해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적어도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야간작업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적어도 45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야간교대 근로자는 다음의 교대근무가 개시되기 전에 적어도 12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1주에 최소 1일에 휴일을 가질 수 있으며, 사용자는 휴일을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로 인하여 주휴일을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월간 평균 총4일의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베트남은 국경일에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국경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익일을 휴일로 가질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71, 72, 73조)

한 사업체나 사용자를 위해 12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보통 1년에 12일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사업장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14일, 현저하게 과중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년에 16일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한 사업체 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한 경우에 5년에 1일 기준으로 증가합니다.





상담사례

TIP

고용계약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일수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개인적인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결혼시에는 3일, 자녀의 결혼은 1일, 양친의 사망, 부인 또는 남편의 사망, 자녀의 사망은 3일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78조)

상담사례 30

회사의 취업규칙을 해당 노동관서에 등록해야 하나요.

2007년 10월 16일

P사는 소방장비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서 많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에 착안하여 수출 및 내수시장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지에 제조법인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근로자들의 관리라고 생각하고 법인의 설립 전에 회사의 내규와 취업규칙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시 주요 내용과 회사 내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의, 노동관서 등의 등록을 필히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체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지방의 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노동법 제82조 3항)

취업규칙은 근로시간, 기술 및 생산과 경영에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취업규칙은 노동법규 및 기타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문서에 의한 노동규율을 기지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사용자는 사업체 내의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노동관서는 노동규율 접수후 10일 이내에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동 기간 기한 내에 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의 주요내용은 근로시간, 휴식시간, 사업체내의 규칙 및 질서, 사업장 내의 노동안전, 위생조건, 사업체의 재산, 기술, 경영기밀의 보호, 노동규율 위반행위와 동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이며 취업규칙은 각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하고 주요사항은 사업체 내의 필요한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위반에 대한 징계는 위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위반 시 견책, 최고 6개월의 감급, 낮은 급여의 타직무에 6개월간 배치 또는 강등, 해고 등을 할 수 있으나, 하나의 취업규칙 위반행위에 대해 동시에 다수의 징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노동법 제83, 84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성격상 복잡하고 위반한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작업 시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동 근로자의 근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TIP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의 일시적인 근무정지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기간에 근로자는 근무정지 전 임금의 50%에 상당하는 임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 근무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미리 지급받은 임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가 위반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일시 근무 정지 기간 중의 임금전액과 기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동법 제92조)

상담사례 31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특별한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7년 10월 24일

B 사는 독일계 회사로서 한국에 지사를 통해 1년 전부터 중국과 베트남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의 상승과 투자환경의 변화로 베트남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

토하고 있으며 결정은 하지는 않았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및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의 특성상 남성직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사무실 및 여성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성근로자들의 회사 근무 시 적용되는 출산 및 특별규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중입니다.

국가는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세금 감면 등 우대정책을 실시합니다. (노동법 제111조)

베트남은 모든 근로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과중하거나 위험한 업무, 여성의 임신 및 양육에 해로울 수 있는 유독물질과 접촉하는 업무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산이나 물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것에 여성근로자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여성근로자들은 특별한 규정을 적용시키는데, 출산 전후기간에 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업무의 난이도, 유해성, 오지작업 여부 등 작업조건이나 업무성격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녀당 1개월씩 추가로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된 출산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임신부는 고용주의 동의 하에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출산후 2개월이 경과하고 조기작업복귀가 임신부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의사의 증명서가 있으면 출산휴가 종료 전 작업장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때 사전에 사용자에게





계 통보하여야 합니다. 조기 작업 복귀 시 작업임금의 출산 수당을 계속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7개월 이상된 여성근로자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 야간 근로 또는 원격지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신 7개월째부터 과중하지 않은 업무로 배치 전환시키거나 임금은 전액 지급하되, 1일 노동시간을 1시간 단축시켜야 합니다. 생리중인 여성근로자는 매일 30분 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 중인 여성근로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 받으면서 매일 60분 간의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노동법 제114, 115조)

상담사례 Tip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편의시설, 욕실 및 여자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며,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신생아 등을 위한 보육원, 유치원을 설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연령의 아이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보육비 및 유치원 경비를 일부 보조하여야 합니다. 태아 검진, 피임조치, 임신중절을 위해 또는 7세 미만의 질병을 가진 자녀의 간호, 신생아 입양을 위해 휴가를 얻는 경우 여성근로자는 사회보험수당을 지급받거나 사용자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위의 사유로 인한 휴가기간 및 수당 금액은 정부가 정하며, 어머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아픈 자녀를 돌볼 경우에도 어머니는 사회보험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법 제116, 117조)

상담사례 32

2008년도 베트남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1월 3일(월)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총인구는 2008년 8월 기준으로 약 86백만 명으로 매년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사는 절단기를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서 베트남의 중남부지방과 북중부지방에 많은 한국 및 외국기업의 철강사 및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들이 진출하는 것을 보고 철강 및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절단기를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하여 투자법규, 절차 및 외국기업의 동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베트남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근로자들의 2008년도 최저임금은 하노이, 호치민시가 약 62.5불, 하노이 인근의 박닌성, 흥옌성, 박장성, 꽝닌성과 호치민 인근의 동나이성, 빈즈엉성, 봉타우성은 약 56.25불입니다.

2009년도에는 베트남 법정 최저임금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외투기업은 평균 20%의 인상이 되어 2009년 1월 1일부로 적용이 됩니다. 하노이, 호치민시는 약 72.6불, 하이퐁시,





다낭시, 껀터시, 팡닌성, 동나이성, 빈즈영성, 봉타우성, 박닌성, 박장성, 흥옌성, 롱안성 등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지역은 약 65.4불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급여는 아닙니다. 2008년도 근로자들의 월평균 급여수준은 제조업종은 미숙련공 공장 근로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고 교통수당, 식대 등 제수당과 초과근로수당 등을 부과하여 임금을 산정할 경우 월 90불~140불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직일 경우에는 영어, 한국어의 구사수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상 대졸 신입사원으로 영어 사용이 중급 정도가 되고, 컴퓨터 사용이 자유로운 신입사원일 경우 보통 200불 정도이고 서비스업종일 경우에는 임금수준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서비스업종(호텔, 유통업, 부동산, 건설, 프랜차이즈) 등의 고급인력은 스카우트 경쟁까지 펼치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공장의 관리자급일 경우에는 월 400불~900불까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업종의 관리자급은 월 500불~1000불 정도이나 실제로 개인의 업무 능력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나며, 더 주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사례 Tip

베트남은 노동력이 전체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산업과 기업이 밀집된 남부의 호치민시와 하노이시 인근 등 일부지역에서는 고급인력의 부족으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간의 인력 스카우트 문제와 2009년도 20%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 등의 경영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른 고급인력들의 채용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산업공단에 입주하는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 부품소재 산업의 제조업은 공장부지의 확보 시 노동인력 채용에 관한 준비를 같이 검토하셔야 하며, 서비스, 유통, 프랜차이즈 분야로 2009년 진출을 준비하시는 기업은 고급인력을 무조건 채용할 것이 아니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채용, 교육하고 계약된 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제도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33

베트남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의 요율은?

2007년 12월 27일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인사 및 노무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기 시작 하였습니다. G 사는 제조업(섬유, 봉제)으로 호치민 인근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하여 인허가를 대행 중이며, 법인 설립 이전에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듯이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각 얼마를 내야 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의료보험, 사회보험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는 실험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베트남에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포괄하는 사회보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근로자가 임금의 1%,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2%를 내고,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임금의 5%,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5%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질병수당제도, 출산수당제도, 산업재해 및 직업병 수당제도, 연금제도, 사망수당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차적 치료책임은 사업주에 있고 사망 시에도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수당이 적기 때문에 사업주가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실험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가 1%, 고용주가 1% 납부하며, 국가가 1%를 지원합니다. 사회보험의 경우 2010년부터 근로자가 8%, 사업자가 18%에 달할 때까지 매 2년마다 1%씩 각각 인상할 예정이며, 외국투자기업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사례 Tip

사회보험율의 년도별 적용률은 2009년은 근로자 5%, 사용자 15%, 2010~2011년까지는 근로자가 6%, 사용자가 16%, 2012년~2013년까지는 근로자가 7%, 사용자가 17%, 2014년부터는 근로자 8%, 사용자 8%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담사례 34

베트남 근로자의 추가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년에 200시간까지의 추가 근무 조건, 원칙과 300시간까지의 추가 근무 조건, 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7년 7월 19일

D사는 동물사료 제조공장을 베트남에 설립하려 여러 가지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법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1일 8시간, 주 48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과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이 1년에 200시간일 때와 300시간일 때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추가 근무시간 조건이 되고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에 200시간까지의 추가 근무시간과 300시간까지의 추가 근무시간 조건에 해당 되어야하고, 각각의 양식에 의해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1년에 200시간까지의 추가 근무 조건은 생산 중의 사고 처리, 급박한 업무 해결, 살아있는 상품의 기한 내 처리,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기술의 엄격한 요구에 의한 상품 및 건설 공정의 처리, 시간 내에 충분한 공급을 할 수 없는 고도의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해결 시에 가능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는 양식에 의거하여 추가 근무시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추가 근무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간 총 추가 근무시간은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험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주간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속된 4일 간의 총 추가 근무시간은 1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험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연속된 4일 간의 총 추가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주 근로자는 최소 1일의 휴식을 얻고, 노동주기에 의해 매주 휴식이 불가능한 경우, 매달 최소 4일의 휴일을 보장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루 2시간 이상을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추가 근무 전에 추가 근무시간 정산에 포함되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공휴일, 설, 연가와 각 휴일에 유급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거나 휴일에 쉬지 못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1년에 300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한 업종은 수출품 생산, 가공 기업, 경영, 방직, 봉제, 가죽, 신발, 수산물 가공의 경우 1년에 200시간에서 300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하나, 급박한 업무의 해결이 필요할 때 양식에 의거하여 시·성 인민위원회에 허가 신청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상담사례

Tip

기업과 단체는 추가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내용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첨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내용을 알고 실현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기업, 단체는 연간 추가 근무 상황에 대해 지방 노동보훈사회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연간 200시간에서 300시간까지 추가 근무시간을 접수받은 인민위원회는 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 노동보훈사회부는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결정서를 인민위원회에 제출하고 6개월과 1년에 한 번씩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35

베트남의 상여금 규정, 퇴직금 규정과 임금등급간 최소 5%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7년 9월 19일

O 사는 한국에서 인플란트를 제조하는 회사로 베트남에 인플란트를 유통, 판매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2009년도부터 단독으로 유통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여 미리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왔으며, 그 결과 1차적으로 호치민시에 인플란트를 판매하는 유통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수차례 오피스를 둘러보았고, 법인 주소지인 사무실의 계약 후에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베트남 근로자의 채용 시 관련법규 및 규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법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세부규정은 없으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1/2개월 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07년 12월 5일 외투기업의 임금책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안내규정(28/2007/TT-BLDTBXH)을 발표하였는데, 임금표상 임금등급(호봉)간의 차이를 최소 5% 이상으로 할 것을 명문화 하여 해당 시나 성의 노동사회보훈





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호봉 간 5% 차이를 두는 규정은 문제의 발생 소지가 많으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며, 임금표를 주재국 노동사회보훈국에 등록하는 것 또한 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이 또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노동법 제64조에는 사용자는 매년 기업의 생산 및 영업실적, 근로자의 작업성과에 기초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편이며, 1년에 한 번 구정에 1달치의 월급을 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임금의 1/2개월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퇴직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합산하여 근거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법률위반 행위로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사례 Tip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회사의 노동조합집행부와 서로 협의를 하여 해고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적어도 45일 전에, 12개월~36개월의 근로계약은 30일 전, 12개월 미만 계약은 적어도 3일 전에 해고 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법인운영



세무, 회계, 금융





상담사례 36

2009년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0월 23일(목)

S 차장님은 한국의 대형 건설사의 지원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S 건설사는 베트남 내의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S 차장 또한 현지 프로젝트를 위해 베트남 출장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내년부터 베트남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부동산, 건설프로젝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부터 베트남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많은 프로젝트가 홀딩이 되고 있으며, 건축 원·부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진행 중이던 외국 건설사의 프로젝트도 많이 중단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S 건설사는 지속적으로 베트남의 부동산시장을 체크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교통인프라 및 도시확장공사의 참여 등 베트남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던 중 2009년 1월 1일부로 부동산 건설 분야의 관련 법령이 개정 되었다는 소식을 현지 법인으로부터 들었으나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상담을 의뢰 하였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분야에 개정된 관련 세금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

세 면제 대상,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 토지사용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동산 건설관련 기업의 법인세율, 부가세 면제 대상의 품목의 변동입니다.

현재 비과세소득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며 개인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유예 되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이에 부속된 자산의 양도, 주거용주택의 양도, 토지임차권 또는 해수면 사용권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개인소득세의 면제는 부부간, 부자간, 형제자매간 등 가족 간의 부동산 양도 소득, 1가구 보유자의 주택 양도소득, 개인의 토지사용권 양도소득 등 직계 및 부부간의 부동산 양도 등의 경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은 매매가액에서 취득원가 및 기타 매매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 금액의 25%나, 금액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매매가격 총액의 2%로 과세표준의 계산을 합니다. 부동산 양도 개인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시기는 양도차익이 발생 마다 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토지사용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현행법에서는 토지사용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본세율 28%를 과세한 이후 잔여소득에 대하여 0%에서 25%까지 누진세율에 의하여 추가로 과세 하였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부동산 양도차익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규정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토지사용권 양도 잔여소득에 대한 누진





세율은 폐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및 건설업체의 법인세율은 기존 28%에서 25%로, 석유·가스·천연자원관련 기업은 기존 28%~50%에서 32%~50%로, 투자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업종의 법인세율도 기존 10%, 15%, 20%에서 15%의 우대세율이 삭제되고, 10%와 20%의 우대세율로만 적용합니다. 부가세법은 현행법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치, 설비 및 공장 등에 부여된 부가세 면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사례 Tip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유형자산을 구성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치, 설비, 운송수단 및 건설자재 등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었으나, 수입부가세 부과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과학기술, 석유탐사 등의 수입자재는 예외로 면세가 유지됩니다. 베트남에서 부동산 및 건설사업시 토지관련 세제는 우리나라의 취득·등록세 개념의 이전등록비가 있으며, 비농업지는 공시지가의 4%, 농업지는 공시지가의 2%를 토지양수인이 이전등록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37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법인세, 부가세, 개인소득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9월 26일(금)

D 사는 자동차시트를 제조, 생산하는 회사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베트남 북부 하노이시 인근의 산업공단에 제조공장을 설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출장으로 공장부지는 확보하였으며, 출장 중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기업의 법인장으로부터 2009년부터 법인세의 인하 및 투자인센티브의 적용이 개정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정 세법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로 법인세는 25%, 개인소득세는 5%~35%, 개정부가세법은 25개 그룹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2008년 6월 3일 베트남 국회는 신 법인세법(No.14/2008/QH12), 신 부가세법(No.13/2008/QH)을 통과시켜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법인세 개정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현행 28%에서 25%로 3%가 인하 되었으며, 현행 법인세 적용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했으나, 개정 법인세법에선 납세의무자에서 개인사업자를 제외 시켰습니다. 또한 신 법인세법은 외국법인도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유무와 무





관하게 납세의무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천연 자원관련 기업의 법인세는 기존 28%~50%에서 32%~50%로 적용이 되었고, 법인의 표준 원자재 소요량을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었으나 2009년부터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표준 원자재 소요량을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였고 표준 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재료비는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부분은 중앙은행 기준금리 150% 초과분에 대하여 손금 불산입하게 하여 이자율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으며, 광고, 마케팅, 접대비 등의 한도가 총 손금산입비용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으나, 개정 법인세법에서는 신설법인의 경우 3년 간은 15%, 이후에는 10%로 신설법인에 한하여 3년 간 5%를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신 법인세법에는 기술개발 준비금을 신설하여 매년 순이익의 10%까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준비금 적립 후 5년 내에 70% 이상을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법인세의 인센티브에서는 2009년부터 15%의 우대세율이 폐지되고 10%와 20%만을 적용하게 되고 10%의 우대세율의 경우에는 15년 간 적용을 받게 되고 과세소득 발생후 4년 간은 면제를 받고, 9년 간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20%의 우대세율은 10년 간 적용이 되며 과세소득 발생 후 2년 간 면제, 4년 간 50%를 감면 받게 됩니다. 기존 법인은 기 부여받은 세제의 혜택을 유지하게 되나, 신설법인은 2009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시기도 현행법에서는 최초 과세소득 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최초 매출 발생연도로부터 3년 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년째부터 면제·감면을 강제 적용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면

제· 감면 기간을 유지하여 주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의 주요 변경사항은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여 적용하였으나 2009년도 개인소득세법의 적용대상에 개인사업자도 포함 하였습니다. 기존의 개인소득은 정규 소득과 비정규 소득으로 나누었으나 2009년 개정소득세법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상속, 증여등 과세 대상 소득을 8가지로 구체화 하였고 양도소득 및 상속, 증여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또한 비과세 소득을 신설하여 부부 또는 직계 간의 부동산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며, 1가구 보유자의 주택 양도 소득, 예금이자, 베트남 교포의 송금액 등은 비과세로 분류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은 매매가격에서 취득원가 및 기타 매매관련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의 25%나 매매가격 총액의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거주요건도 강화되어 12개월 간 누적된 체류일수가 183일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과세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임차 주택이 있는 경우 183일 미만 체류자라도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개인소득세율의 적용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합하여 0%를 없애고 5%~35%로 7단계로 세율을 조정 하였습니다. 0%의 세율을 없애는 대신에 2009년부터는 소득 공제 제도를 신설 하였으며, 본인은 월 4백만 동, 부양가족은 월 1인당 1백 6십만 동까지 공제되며,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세의 과세 방식은 기존에는 단일과세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종합과세(사업소득, 근로소득)와 분리과세(종합과세 이외 소득)로 이원화 하였습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세율도 20%로 5% 인하 하였으며, 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현금 또는 기타 형태의 복지후생비는 개인소득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지급해주는 교육비, 집세, 상여금, 기타 현금, 비현금성 복지후생비 등





개인소득세로 합산되는 복지후생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변경사항은 면세, 재화, 용역 등 28개 그룹에서 25개 그룹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입 생산설비의 부가세 면제였던 부분이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생산설비의 수입 시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신기술관련, 특수운송장비, 천연자원개발 관련 설비는 계속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제운송업의 경우 매입부가세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고 자본거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부가세는 2009년부터 면제되고 매입부가세의 수정신고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신고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매입부가세의 공제 요건도 강화되어 2천만동 이상 지급 시 반드시 은행을 통하여 송금해야 하는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담사례 Tip

분리과세 소득세율은 거주자, 비거주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프랜차이즈나 로열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5%, 복권이나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10%,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차익기준으로 20%나, 매매가격기준의 0.1% 이고, 부동산양도소득은 양도차익기준의 25%나, 매매가격기준의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38

베트남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1월 6일(목)

B 사는 화학도료를 생산하는 회사로 베트남에 제조법인은 아직까지 설립하지는 않았으나, 그룹사 내의 건설사는 베트남에 건설법인을 설립하여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조공장의 설립은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조법인으로 가느냐, 유통법인으로 가느냐를 놓고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기준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5일부로 베트남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10%이며, 대출상한금리는 15%,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13.5%~15%입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11월 21일에 기준금리를 12%에서 11%로 낮춘지 2주 만에 11%에서 10%로 추가 인하를 하였으며, 국내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은행 및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올 3월 발행한 12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정부채





권에 대한 담보인정과 지급준비금 비율을 현행 1년 이상 예금의 경우 4%, 1년 미만을 10%로 낮추고 외환예금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을 3%, 1년 미만을 9%로 각 2%의 지급준비금 비율을 하향 하였습니다. 기준금리의 계속적인 인하는 베트남 정부가 통화정책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물가 하락세에 따른 정부정책의 확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통계청이 집계한 10월 무역수지 적자폭은 168억 달러, 물가 상승률은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0.19%가 하락하였고, 연간 물가상승률도 23.15%로 집계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외환시장의 변동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통화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며, 무역수지 적자의 해소와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2009년도에도 최우선 정책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상당사례 Tip

베트남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3년 12월에 7.25%, 2005년 3월에 8.25%, 2008년 2월에 8.5%, 2008년 5월에 12%, 2008년 6월 14%, 2008년 11월에 11%, 그리고 2008년 12월 5일 현재 10%입니다.

상담사례 39

베트남 부동산 및 건설사업 관련 주요 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10

2007년 6월 28일

베트남 부동산 및 건설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베트남의 호치민시와 하노이시 그리고 주요도시에 우리 건설사의 각종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주택개발 프로젝트, 주상복합아파트, 호텔 및 리조트, 골프장 등에 진출하려는 건설사들의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법규와 세금 등에도 궁금한 부분의 자문이나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D 건설사는 호치민시에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으며, Y 소장은 베트남 파견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체크하는 중입니다.

토지관련 세제, 건설시공관련 세제, 주택분양관련 세제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프로젝트 시행 시 가장 먼저 국가로부터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유상으로 교부받을 때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되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토지양수인은 토지사용권의 취득 시 우리의 취득세와 등록세 개념인 이전등록세(비농업지는 공시지가의 4%, 농업지는 공





시지가의 2%)를 납부합니다. 토지사용권의 취득자가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거나, 타 회사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인민위원회의 관련 기관에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토지사용권의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기준의 25% 또는 취득원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도(매매)가격기준의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시공을 하는 경우 관련세제에는 부과세, 법인세,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시공사는 계약금액에서 베트남 하도급 금액을 빼고 다시 직접 수입한 자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원청사와 협의하여 원청사가 원천징수하고, 준공 후 원청사는 최종납입을 합니다. 법인세는 건설시공(시행)사가 원천징수를 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의 3%를 납부하며, 준공 후 법인세 28%와 비교하여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수입자재 및 장비는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분양 관련 세제에는 이전등록세, 부가세, 법인세 등이 있으며, 부가세는 분양가의 10%이며, 주택매입자가 납부하게 되고 이전등록세는 분양가의 1%를 주택매입자가 납부하고 시행사가 등록 대행을 하게 됩니다. 법인세는 주택개발자가 개발이익의 28%를 납부하며 3개월 단위로 추정이익을 근거로 납입 후에 매년 말에 정산합니다.


 상담사례

TIP

베트남에서 프로젝트 시행, 시공시 공사관련 각종 보험은 공사보험, 장비보험, 인보험으로 크게 나누며, 공사보험은 시공비 4,000만불과 공기 2~3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0.23%이며, 장비보험은 하도급장비는 하도급업체에서 부담하고 직영장비는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15개월 기준으로 3.5%를 장비가로 반영합니다. 인보험은 본사직원은 본사방침에 따르고, 베트남 현지 노무자는 하도급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이때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현지외국인이나 한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현지에서 직접 인보험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40

법인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공제가능비용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제불가능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2월 26일(화)

D 사는 낚시바늘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D 사의 O 대표이사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세 차례에 걸쳐서 베트남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현지의 공장건물은 임대하여 법인을 설립하려 준비하고 있





습니다. 투자법인 설립절차와 서류, 투자법규 등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문 및 상담을 받았습니다. 해외투자가 처음인 D사의 O 사장님은 베트남 법인의 운영 시 법인세법 상 공제가능비용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제가능비용은 사회보장기금 납부액, 관리비, 판매관련 비용, 신고된 임금, 급여, 수당, 식대 등이며, 공제불가능비용은 과세소득 수입활동의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비용, 감가상각한도 초과액, 벌과금, 관련증빙이 없는 비용 등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얻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제품이나 반제품 및 용역제공을 위하여 이용되는 원·부재자 및 연료비, 신고된 임금, 급여, 수당, 식대 등과 퇴직금지급액 및 일정액의 퇴직급여충당금 추계액, 영업활동 및 생산에 이용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관리비 및 판매관련 비용, 기술자료,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를 이용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비용과 기술자문비용, 상업은행 이자율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지급이자(2009년 1월 1일부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150% 범위 내의 지급이자), 일정한도 내의 채고자산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전입액, 사회보장기금 납부액, 기업자산 보험료, 위 비용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광고선전비 및 판촉비, 접대비(2009년 1월부로 신설법인은 3년 간 15%이며 그 이후는 10% 적용), 토지임대료, 법인세를 제외한 조세공과금(관세, 면세물품관련 부가세, 각종 공과금) 등은 공제가능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과세소득의 수입활동의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 감가상각한도 초과액, 도난·자연재해 및 원인불명에 따른 손실, 선급금 및 판매보증·수선충당금, 벌과금, 생산차질에 따른 손실, 관련증빙이 없는 비용, 자본금 납입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차입금을 사용한 경우의 차입금 이자,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 영업무관 비용, 범위초과 광고비, 관촉비, 본사로부터 배부된 비용 등은 공제불가능 비용입니다.

상담사례 Tip

베트남의 경우 기업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과 같은 비용은 기타비용에 포함되어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총원가의 10% 범위 내에서 비용이 인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설립되는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3년 간 15%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는 똑같이 10%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인세법 상의 비용인정항목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41

개인소득세법 상 거주자, 비거주자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란 무엇인지요.

2008년 10월 1일(수)

올해까지는 개인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의 유형이 정규소득과 비정규소득으로 나누어졌으나, 2009년부터는 거주자의 종합과세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외에 거주자, 비거주자가 동일하게 분리과세 소득이 적용됩니다. D 사는 베트남에 복합운송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트남은 합작을 통해서만 복합운송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은 고려 중에 있으며, 먼저 베트남의 세무, 회계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리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프랜차이즈 또는 로열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복권 또는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주식양도소득, 부동산양도소득 등을 말합니다.

2009년부터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포함하는 종합과세 개인소득세율을 5%~35%까지 7단계로 적용하며, 현행 정규소득과 비정규소득으로만 나누었던 소득구분을

분리과세 소득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 종합과세 소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분리과세는 거주자, 비거주자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자소득은 5%, 배당소득은 5%, 프랜차이즈 및 로열티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5%, 복권 또는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10%,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10%,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차익기준의 20%나 매매가격기준의 0.1%이며, 부동산양도소득은 양도차익기준 25%나 매매가격기준 2%를 분리과세 소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당사례 Tip

2008년까지는 비거주자의 판단을 12개월 간 누적체류일수 182일 이내인 경우로 하여 베트남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25%의 단일세율로 과세 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20%로 5%가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거주요건이 강화되어 임차주택이 있는 183일 미만 체류자도 거주자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상담사례 42

부가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9월 19일(금)

T 사는 TV 부품을 제조, 생산하는 회사이며, 베트남 하노이 인근 지역에 합작이나 단독으로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토지임차료 부분이나 제조공장 부지는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으며, 산업공단마다 임대료 차이가 많아 신중하게 공장부지를 선택하려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S 사장님은 출장 중에 2009년부터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수입 생산설비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현지 회계법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생산 설비 수입 시, 2009년부터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나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5%의 세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제품 등에서 0%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품 및 임가공수출, IT 소프트웨어의 수출, 수출용역 등은 0%, 일반적으로 생필품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 의약품, 의료용구 등

은 5%, 부가세 면제대상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활동 등은 표준세율인 10%를 부과 합니다. 현행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수입 생산 설비에 경우 부가세가 면제였으나, 2009년부터는 고정자산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생산 설비 수입 시의 관세만 면제되고,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신기술 관련, 특수운송장비, 천연자원개발 관련 설비는 계속 면제 됩니다. 부가세는 연속된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누적매입부가세액이 누적매출부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특정한 계절이나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와 관련된 초과매입 부가세액이 큰 경우에 각 기간별 또는 월별(초과매입세액이 2억 동 이상인 경우)로 환급이 됩니다. 또한 합병, 해산, 청산, 파산 시 확정 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세액이 있는 경우도 환급이 됩니다.

상당사례 Tip

2009년 개정되는 부가세법에서 현행 국제운송업은 면제 업종이었으나 0%로 적용을 받아 매입부가세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자본거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가 명시되었으며 매입부가세 수정신고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기한이 연장되었고 2천만 동 이상 지급시 반드시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도록 공제 요건을 강화 하였습니다.





상담사례 43

법인세법 상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8월 28일(목)

D 사는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성에 모자 및 가방을 생산하는 제조법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에 근로자들의 채용과 교육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세무, 회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최장 5년 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10%이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결손이 발생한 해의 다음 사업년도부터 최장 5년 간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 양도 등 자산양도소득으로 발생한 손실은 동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만 차감합니다. 기술개발준비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베트남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은 매년 순이익의 10%까지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 후 5년 이내에 설정액의 70%이상을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

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준비금 설정으로 감소한 법인세 상당액에 기간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채계산을 위한 세율은 준비금설정 사업년도에 적용되었던 법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시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율은 1년 만기 국공채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자계산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이자상당액은 준비금설정일로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까지 세무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지연납부 시 적용 이자율로 산정합니다.

상담사례 Tip

법인세 우대세율 적용은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 고도기술산업단지에 설립된 법인, 기술 집약적 산업, 과학기술연구 및 개발사업, 중요한 사회간접 시설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5년 간 10%의 우대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교육훈련, 직업교육, 건강보험, 문화, 체육 및 환경산업분야의 법인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경제사회적 조건이 낙후된 지역에 설립된 법인은 10년 간 20%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며 농협 조합 및 상호신용기금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담사례 44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는 비용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1월 11일(화)

9월과 10월에는 국제금융위기로 베트남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자문이나 상담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11월 들어서 다시 투자 문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G 사는 호치민 인근 성에 우레탄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공장부지는 동아여성, 빈즈영성, 롱안성 등에 몇년 간 거래를 하였던 베트남 현지인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장부지만 확보 되면 법인 설립을 위한 인허가는 법무법인을 통해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과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은 법인의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실제비용과 법에서 규정한 적격한 세금계산서와 관련증빙이 있는 비용입니다.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은 벌과금, 회수가능 비용, 외국 법인이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게 부과한 경영관리비중 규정을 초과하여 배분된 금액, 규정을 초과하여 적립하는 임의적 적립금 및 준비금의 초과액, 신고한 수율을 초과하여 사용된 원재료, 부재료, 연료, 가스, 기타 재료비,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이자율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융기관 혹은 타법인에서 차입한 차입금이자, 초과분,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기간귀속이 다른 선급비용, 개인회사 오너에게 지급된 급여 및 임금, 법인의 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법인의 설립주주에게 지급된 보수, 실제 지출되지 않았으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급여,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이 없이 지출된 비용, 미납된 자본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매입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총 손금산입 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 마케팅비, 판매촉진비, 판매수수료, 접대비, 경조사비, 회의비, 원가보조비, 할인료 등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설립일로 3년 이내의 기업의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총 손금산입비용의 산정은 여기서 규정하는 비용들은 제외하며, 유통회사의 경우 상품원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육, 보건, 천재지변 혹은 법에서 정한 불우이웃을 위한 주택구호 등을 제외한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당사례 Tip

법인세는 2009년 1월 1일부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원유, 가스 및 기타 천연자원의 시굴, 탐사 및 시추 등의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활동에 따라 32%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기간의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만일 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45

개인소득세법 상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1월 4일(화)

D 사의 K 사장님은 한국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에 중화학공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중부지방 중꺇(Dung Quat)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D 사의 K 사장님도 관련된 업체들이 투자하는 중꺇지역에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을 설립하려고 여러 가지 절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노무관리와 회계관리인 것 같아 미리 공부하고 있으며, 특히 법인세, 부과세, 개인소득세에 대해서 관심있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상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분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개인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 급여소득, 자본소득, 자산양도소득, 부동산양도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프랜차이즈소득 등입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법에 따라 면허 혹은 자격증을 소지한 개인이 제공하는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급여 및 임금, 기타 급여성격의 수입, 수당 및 지원금, 보상금, 각종

사업협회, 경영위원회, 검열위원회, 관리위원회 등 기타 조직에 참여하여 수령하는 금액, 금전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무자가 수령하는 모든 형태의 복리후생, 보너스, 이자소득, 배당소득, 국공채이자소득을 제외한 기타 자본소득, 법인 및 기타 사업조직의 지분양도 소득, 주식양도소득, 기타 모든 형태의 자본양도소득, 토지사용권 및 건물 양도소득, 주택의 소유권 및 사용권양도 소득, 토지임차권 혹은 수역권 양도소득, 기타 부동산 권리의 양도로 받은 모든 물품, 복권당첨금, 모든 형태의 장려금, 도박, 기타 모든 형태의 상금, 지적재산권의 양도, 사용권리의 제공, 기술이전 소득, 프랜차이즈 소득, 등기 및 등록이 가능한 주식, 법인 및 기타 사업조직의 부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상속으로 인한 소득과 증여로 인한 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비과세소득은 부부간,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자식간, 장인과 사위, 조부모와 손자손녀, 형제 간의 부동산 양도소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양도하는 주택 및 주택 부속 토지의 양도소득, 국가가 개인에게 할당한 토지사용권의 가액, 부부간,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자식간, 장인과 사위, 조부모와 손자손녀, 형제자매 간의 부동산 상속 혹은 증여소득, 농업, 임업, 염전, 축산업 및 농작물재배, 수산업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가게 혹은 개인의 수입, 국가가 할당한 농경지의 전환으로 인한 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 및 사회보장보험 등에서 나오는 이자, 국외 거주하는 내국인으로부터 송금되는 외환수입, 법에 의한 교대 혹은 정규노동시간을 초과하여 받은 야간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보험 연금,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장학금, 학자금 지원을 위한 구내에 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장학금, 생명보험과 비생명





보험 보상금, 산재보상금, 법에 의한 국가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수입액, 자선, 인도적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가 인정하는 자선기금 등에서 수령하는 보조금, 국가가 인정하는 자선 및 인도적 목적을 위하여 외국 자선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등은 모두 비과세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상담사례 Tip

외국통화로 수령한 소득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날에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한 시장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비화폐성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며 자본소득, 주식양도를 제외한 자산양도소득,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프랜차이즈소득, 상속 및 증여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각각 과세합니다.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발생시기별 혹은 연간으로 과세하고 연간 소득계산방식으로 신고를 원하는 자는 매년 초 과세당국에 신고방식등에 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합니다.

상담사례 46

개인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소득공제와 기부금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0월 28일(화)

S 사는 중국에서 악세서리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베트남으로 제조공장을 옮기려고 6개월 전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의 지역과 하노이시 인근의 지역을 조사하여 왔으며, 최종적으로 하노이시 인근의 성으로 공장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의 운영 시 회계, 세무와 근로자들의 채용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던 중, 2009년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 부분과 기부금공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합니다.

거주자로서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납세자 1인당 월 4,000,000동의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1인당 월 4,000,000동, 연 48,000,000동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부양가족 1인당 월 1,600,000동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공제는 납세자 1인당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미성년자,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나, 현재 대학교, 대학, 특수 중학교 혹은 어학과정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직계비속, 신체적장애가 있는 배우자, 고령이나 신체적장애가 있는 직계비속, 기타 거주자가 직접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양가족 등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로서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자선기금 등에 기부한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 노인을 위한 복지기금 및 시설에 대한 기부금, 자선, 인도단체, 장학재단 등에 기부한 자선기금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TIP

부동산양도소득은 거래시점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되 양도가액은 양도시점에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취득시점의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합니다. 필요경비는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조세공과 및 토지개발원가, 주택개발비용, 토지성토비, 주택, 건축물, 건물에 대한 투자 및 건설비, 토목원가 및 기타 부동산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원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합니다. 국가는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어렵거나 계약서 상 기재된 양도가액이 인민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토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가액 결정을 위한 세부지침 및 규정을 두며, 부동산양도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서상 기재된 양도일에 따릅니다.

상담사례 47

부가가치세법 상 매입세액의 공제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8년 10월 31일(금)

M 사는 연마포(섬유)를 생산하는 회사로 중국에 운영 중인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려고 금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고, 각 기관에서 실시한 베트남 투자설명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공장부지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공장설립은 절차 상의 문제라 생각 되어 준비하는 동안에 현지 세법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법인의 운영 시 매입세액의 공제와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세액공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누적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금액이 남아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된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고정자산에 부과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구입하는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 가능하고, 매월 발생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신고 및 공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발견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화와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수입시에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구매의 경우 반드시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 수출용 재화는 외국과의 재화공급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은행송금전표, 관세신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채권, 채무 상계 또는 정부 부채와 상계하는 경우는 은행을 통한 송금으로 간주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누적 3개월 이상의 기간에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금액이 남아 있는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규투자프로젝트나 투자중인 사업자의 경우 공제할 매입세액이 2억 동 이상인 경우, 수출사업자의 경우 공제할 매입세액이 2억 동 이상인 경우 매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소유권의 변경, 기업형태의 변경, 합병, 결합, 분할, 분리, 해산, 파산 혹은 청산 등의 경우에도 공제할 매입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관련 증빙이 있어야 하며, 공급 받는 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지급증빙으로 간주되는 인지 혹은 티켓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작성자

해외투자전략팀 김도훈 위원

KOTRA 베트남 투자자문/상담 사례집

발 행 인 조환익
편 집 인 박기식
발 행 처 KOTRA
인 쇄 처 세광문화사
발 행 일 2009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02) 3460-7353
홈 페이지 www.ois.go.kr
